

조선전기 서당교육에 대한 試論

김경용*

《요약》

이 연구는 양란의 발발과 그 뒷수습이라는 막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서당에 대한 이해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조선전기 향촌교육에 대한 시행방침의 기초와 추이를 밝히고, 또다른 한편으로 실제 나타난 당시의 향촌교육 실행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조선전기 향촌교육의 실태를 종래와 달리 보고자 하였다.

방침의 기초와 추이를 논하는 것은 주로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참고로 하였고, 조선전기에 학도들 수학조건을 변화시키는 게 향촌교육에 대한 방침의 기초와 추이를 구체화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훈민정음 창제, 한자학습교재의 유통, 언해서 간행, 삼각행실·소학 교육 강조, 향약의 보급, 생원·진사시 시행횟수의 누적 등을 결들여 논의하였다. 향촌교육 방침과 관련된 실제 현상은 개인의 수학사례 및 교수활동으로 나누어 『조선왕조실록』과 개인문집의 기사를 활용하여 논의하였으며, 조선전기의 향촌교육활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박승(朴承, 1520-1577)이 주도하여 운영한 구고서숙의 입약절목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전문을 소개하였다. 또한 읍지를 조사하여 상주·진주·안의·안동 등 몇몇 지역에 양란 즈음까지 설립되어 운영된 소규모 교육시설이 어느 정도였는지 제시하였다.

이런 작업을 통해 파악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란 이전에 군현 단위 이하의 지역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인구가 상당했고, 따라서 그들이 활동할 만한 교육시설 역시 희소하지 않았으며, 일종의 교육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직성과 체계성을 띤 것으로서, 국가적 교육시책이나 방침과 무관한 게 아니었으며 관(官)의 간여를 도외시하고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교육활동이 향약과 연계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교육인구의 대상과 범위가 일부 특정집단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서당교육 내지 향촌교육의 실태는 양란 이후 교육에 대한 인적·물적 조건을 임란 이전의 수준으로 복구하고 나아가 더욱 더 알차게 확충하려는 노력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1732년 조현명의 「권학절목」이 전국에 반포된 이후의 향촌교육 열개는 임란 이전에 그 예비적 실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다.

【주제어】 서당, 향촌교육, 동몽학, 각면학장, 면훈장, 각면학도, 교육네트워크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서론

서당에¹⁾ 대한 기존의 이해는, 양란(왜란·호란) 이후 확산되기 시작하여 18·19세기에 전국에 걸쳐 편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왜 던지지 않는지 의아하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양란 이후의 이런 현상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향촌교육 실태인가, 아니면 왜란 이전에 이미 구축되어 있던 서당들이 양란을 거치며 상당수 소실되었다가 이후에 복구하고 증보해 나아간 것인가?

종래의 이해로 보자면, 왜란 이전에 향촌교육 조건이 미비했었는데 혹독한 전쟁을 잇달아 치르고 나서 이전보다 오히려 상황이 더 개선되었다는 셈이 된다. 이런 식으로 향촌교육 실태의 추이를 이해하는 것은 어쩐지 석연치 않다. 왜란 이전에 이미 상당 수준의 향촌교육 조건이 갖춰져 있었는데 양란으로 인해 피폐해졌고 이후 이전의 향촌교육 조건을 복구하여 한층 더 확충시켜 나아간 것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이런 이해방식을 거들만한 귀납적 사료가 희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전기 향촌교육을 이런 방식으로 조망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 당시의 향촌교육 실태를 종전과 달리 이해하는 데에 부응하는 사료는 적지 않으며, 발굴하려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왜란 이전에 이미 각 군현마다 하나씩 향교가 설치·운영되고 있었고 군현의 규모에 따라 정원이 정해져 있었다. 즉, 선발에 의해 향교에 적을 두는 유생을 정한 것인데, 이 선발에 가담할 수 있는 모집단은 어떻게 파악되었을까? 그 모집단은 향교 소재지 군현에 거주하고 있는 16세 이상 유생 전원인가, 아니면 군현 내의 각 지역에서 추천된 인원만을 대상으로 선발한 것인가?

향교에서 새로이 유생을 선발하는 것은 궐원이 생겼을 때 이루어지는데,²⁾ 이때 빈자리를 채울 후보자가 파악되어 있어야 한다.³⁾ 조선후기의 사료이지만 아래와 같

1) 향교·서원 이외의 소규모 교육시설을 모두 통칭한 것.

2) 궐원은 크게 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소속 유생이 대·소과에 합격했을 경우. 둘째, 사망·이사·노제(老除)*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셋째, 투필(投筆)·반무(反武)·귀농(歸農)·낙강(落講) 등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퇴출될 경우. *老除: 규정연령을 초과하여 향교 재직인원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시기에 따라 규정연령이 변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一善誌』學校第五, 學制: 凡民以上志學者 皆籍校業 額數則 大都護州府九十一府官七十 縣官三十 數外儒生 置額外案 亦隨行校中 年未及冠者 籍童蒙案 五十以上 除名校案 置二件 皆官署踏印 一納官中 一置校中 … .

은 「교생대년안」을 접할 수 있는데, 향교 재적 유생이 될 후보자 명단으로 보인다. 또한, 16세에 이르기까지든 이후이든 향교 소속 유생이 될 만한 이들은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어디에서 누구한테 수학하고 있었으며, 향교의 교수·훈도나 수령은 이들의 수학실태(인원, 수학수준, 교수자 등)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확연히 풀지 못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 공부할 곳과 가르칠 인물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림1> 정산향교 『교생대년안』(1815)

양란 이후에 취해진 교육관련 조치나 교육시설의 확충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조성되어 있던 것을 복구하는 현상임을 말해 주는 사료는 그리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현대의 시각으로 새롭게 풀이하여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려고 시도할 것도 없이, 이미 조선 후기 당대의 인물 자신들이 취해야 할 바가 전란 이전의 상황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언명하고 있다.

3) 연령미달의 학도들을 「동몽안」에 올려 놓도록 했다(年未及冠者 籍童蒙案). 상기 『一善誌』 규정 참조. 또한, 정원에 들기 전에 시기를 기다리는(待年) 별도의 명부(別案)를 두는 규정도 접할 수 있다. 『안의읍지』 「학교」 향교: 절목 … ○元定校生三十人 輪回作番聖廟守直事 … ○童蒙五人 付於習讀別案 待年限 次次陞儒案.

《교육사학연구》 제27집 제2호(2017. 11.)

1751년 임필대(任必大, 1709-1773)가 의성현령⁴⁾ 임상원(林象元, 1709-?)에게 보낸 「과강절목(課講節目)」을 보면, “면훈장을 두어 각 면의 학도들을 가르치게 한다”(擇置面訓長 以勸導各面諸生)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치가 예전에 이미 시행하던 바 임을 강조하는 주석을 달아 놓고 있다.

즉, 1580년에 한강 정구(鄭述, 1543-1620)가 창녕현감 시절 관할 지역의 사방에 서재를 세워 각각에 훈장을 배치했으며, 1577년 관찰사가 하달한 절목에는 “각 면에 사장(師長)을 한 명씩 두어서 인근의 학도들이 편하게 왕래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런 조치는 지금도 역시 준행해야 한다는 것이다.⁵⁾ 임필대의 주석에 의하면, 창녕현감 정구의 1580년 조치는 그 이전 1577년에 관찰사가 내린 지침에 따른 것인데, 정구가 창녕현감 시절에 실제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그의 연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창녕현감으로 제수되었을 때, 선조한테 홍학에 가장 힘쓰겠다고 하였고 옛날 가숙 제도를 본떠서 부임한 지역의 사방 각지에 서재를 설치하고 어린 선비를 양성했다는 것이다.⁶⁾

군현 단위 교육시설인 향교 이외에, 면리 단위의 교육시설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조선초기부터 줄곧 시도되었다는 사실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시행방침을 밝힌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방침과 관련된 실제 현상이다. 시행방침에 따라 실제 현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고, 실제 현상이 먼저 나타나고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침이 뒤따랐을 수도 있다.

4) 『승정원일기』(1750.5.14.): 有政 吏批 … 林象元爲義城縣令 … .

5) 『剛窩先生文集』 권3 「書」, 與林侯<象元>附課講節目<辛未(1751)八月>:
一.擇置面訓長 以勸導各面諸生.

謹按本道寒岡鄭先生 知昌寧時(1580) 四境置書齋 各置訓長 又萬曆丁丑間(1577) 觀察使到付節目內 各面置師長一員 使近處學徒 便於往來受業 此亦今日之所當遵行者也 必須擇才行兼備之人 擢置訓任 以勸導各面諸生 則其於課學之方 亦豈小補云爾.

6) 『寒岡先生年譜』 권1: (萬曆)八年<我宣祖十三年>庚辰<先生三十八歲> 二月 拜昌寧縣監 疏辭 不允. … ○四月 陞辭<宣祖引見 … 問 爾其之縣 何以治民又將奚先? 對曰 臣本才疎學淺 惟恐不堪 但古人云 若保赤子 臣雖不敏 請事斯語 而願先興學焉 … >○閏四月赴任<倣古家塾之制 四境設書齋 儲養士子 每月朔望 就謁文廟 引諸生陳說義理 … >.

II. 조선전기 향촌교육에 대한 방침의 추이

태종7년(1407) 권근(權近, 1352-1409)은 12개 조항의 「권학사목」을 올렸는데, 거기에는 “각 지방에서 서재를 두어 학도들을 가르치는 자는 다른 고을의 향교교관으로 파견하지 말고 생도들이 편안하게 강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항이 들어 있으며 그 대로 승인되었다.⁷⁾ 이 조항은 향교 이외에 개인운영의 교육시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교육시설과 교수자의 존재는 학습자의 접근성을 높이게 되므로 학도들이 용이하게 왕래하며 공부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어린 학도들한테 좋은 교육환경이다.

한양의 사부학당이나 지방의 향교 이외에 학도를 가르치는 곳을 중앙은 동몽학이라 칭했고 지방에서는 서재 또는 서당·서숙·향숙·소학당·동몽학 등으로 다양하게 불렀다. 교수자는 동몽훈도와 학장·훈장으로 각각 호칭했다. 동몽학(중앙)과 서당(지방) 등 동몽교육 시설을 확충하여 동몽훈도와 학장·훈장으로 하여금 나이 어린 학도들을 가르치는 데 힘써야 한다는 방침을 보여주는 사료를 연대 순으로 소개하면서 조선전기 향촌교육 방침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25] 예조의 계문: “... 요사이 중앙과 지방의 학도가 마음을 다하여 학업을 닦지 아니하기 때문에 준수한 선비가 드물게 나오는 한편, 교관과 **학장**은 어린이를 가르치기에 뜻을 두는 자가 열에 한 둘도 없습니다. ... 청컨대 지금부터는 중앙과 지방의 교수관·교도·**학장**은 학문에 정숙(精熟)하여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을 골라서, 성균관과 사부학당에 제수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예조에서 항상 검찰하여 계문하게 하며,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친히 강문(講問)하여 예조에 공문을 보내어 아뢰게 할 것입니다. 만약 효과를 이룬 자가 있다면 인사고과[褒貶]에 특별 가산점을 부여하게 하십시오.”⁸⁾

조선초에 당연히 지방의 여항에 이르기까지 학도들이 공부하기에 용이한 교육여

7) 『태종실록』(1413.3.24.), 『陽村先生文集』 권31, 論文科書: ... 謹將勸學事目一二條件具錄申聞 伏候聖裁 ...

一. 前朝之時 在外閑良儒官 私置書齋 教訓後進 師生各得所安 以成其學 今者師儒 或爲他州教授 違離家屬 廢棄生業 皆欲苟免 生徒逼令赴其鄉校 不得自便受業 守令或役以書寫之務 名爲勸學 實多廢弛 自今在外儒官私置書齋教訓者 毋敢定爲他州教授 生徒毋令強赴鄉學 監司·守令乃加勸勉 使各安居講學 以裨風化. ... 從之.

8) 『세종실록』(1425.7.27.): 禮曹啓 ... 比來京外學徒不專心鍊業 故俊秀之士罕出 教官·學長用意養蒙者 十無一二 ... 請自今京外教授官·教導·學長 擇學問精熟堪爲師表者 授之成均館·四部 勤慢則本曹常加檢察啓聞 外方則觀察使親自講問 移文本曹轉啓 如有成效者 特加褒貶.

건을 갖추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의 곳곳에 책임자를 배치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상기의 인용문에서 학장은 사학이나 향교의 교수요원이 아니라 동몽학이나 향숙에서 학도들을 가르치는 인원을 말한다. 개국한지 30년 정도 지난 즈음에 이런 인원이 전국에 널리 분포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교수요원으로 삼기에 적당한 인원을 찾기 힘들었던 게 당연하다. 그래도 인원을 물색하여 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었다고 본다. 개국 이후 100년이 넘어간 시기가 되자 인적·물적 조건이 상당히 호전되었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탄력을 받게 된다.

조선의 각 지방에서 읍내와 벽촌을 망라하여 교수요원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인원은 생원·진사로서 대과에 도전하지 않은 자 또는 대소과 초시에 입격한 적이 있는 자라고 보는데, 무엇보다 생원·진사 배출인원 규모가 교수요원 인적 자원의 편제 여부에 중요한 판단기준일 것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조선조를 통틀어 소과가 232회 시행되었는데, 1507년까지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46회의 소과가 시행되었다. 이즈음에 조선은 전국에서 교수요원으로 활동할 인적 자원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자.

[1506] 신세호가 또 아뢰었다. “동몽학(童蒙學)은 옛적에 어린이를 가르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학교가 폐(廢)하여 과부의 아들이 능히 배우지 못하고, 또 비록 부형이 있어도 이와 같이 공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역시 공부시킬 방도가 없습니다. 청컨대 옛 법을 거듭 밝혀서 동몽학을 세워 배울 수 있는 길을 넓히소서”라고 하자, 상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니 영사 성희안이 아뢰었다. “이와 같이 하면, 어린이가 스스로 학교에 나아갈 것입니다.”⁹⁾

[1514] 영사 김응기가 아뢰었다. “... 그러나 벽촌에 사는 자는 학교에 나오지 못할 것이니, 신의 생각에는, 역시 조종조의 전례에 따라 큰 마을에 학장소(學長所)를 두어서 가르치게 하면 아이들도 다 학문에 힘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가(家)에는 숙(塾)이 있고, 당(黨)에 상(庠)이 있고, 술(術)에 서(序)가 있고, 국도에 태학이 있었으므로, 여리(閭里)에도 모두 가르치는 곳이 있어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다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¹⁰⁾

9) 『중종실록』(1506.12.29.): 辛世瑚又曰 童蒙學 古之所以訓誨童蒙者也 近者學校廢弛 寡婦之子 不能爲學 雖有父兄 若是不學者 則亦無從爲學 請申明舊法 立童蒙學 以廣爲學之路 上顧問左右 領事成希顏 曰 如此則童蒙自當就學.

10) 『중종실록』(1516.5.30.): ... 領事金應箕曰 ... 然在僻遠村落者 未得赴校 臣意 亦依祖宗朝例 設學長所於巨村 使之教誨 則兒童亦皆得以業學矣 古則家有塾·黨有庠·術有序·國有學 閭里皆有教誨之

상기의 두 기사는 한성과 지방의 동몽교육에 시설과 교수요원을 확충하자는 의논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옛 법을 거듭 밝히고 … 조종조의 전례에 따라” 동몽교육을 충실히 시행하자는 것이다. 이는 이전부터 동몽교육의 확충에 노력해 왔으나 제 궤도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금 한성의 구석구석과 지방의 벽촌에까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는 용의의 표현이다. 이런 지향점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1516.5.] 김응기가 아뢰었다. “관학유생(館學儒生)에 분디 액수가 있고 예전에는 동몽훈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예조가 검찰해야 할 바입니다. 지방의 촌락에도 학장을 두는 것이 옳겠습니다.”¹¹⁾

[1516.11.4.] 사경(司經) 기준이 아뢰기를, “… 대저 인재를 어릴 때부터 배양하는 것은 앞날에 쓰기 위한 것이니, 국가에서 당초에 동몽학을 설치한 것은 생각이 여기에 있던 것인데, 이제는 볼 수가 없으니 마땅히 거듭 밝혀야 합니다”라고 하고, 안국이 아뢰기를, “동몽학은 곧 근본 교육이니 지극히 유익한 일입니다. 이것은 조종조에서 설립한 것인데, 지금 그 훈도가 비록 네 사람이나 있으나 모두 녹봉이 박한 체아직인 데다가 윤번으로 교체하게 되니 누가 능히 교육에 힘쓸 수 있겠습니까? 서반(西班)에 쓸데없이 녹만 먹는 사람이 아직도 많으니, 서반 체아직의 것을 옮겨다 주어 권장한다면 아마 힘써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라 하였다.¹²⁾

[1516.11.6.] 예조에 전교하였다. “동몽학을 두는 것은 계몽에도 적절하고 교학(敎學)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니, 체아직을 더 주어 권장하는 절목을 마련하여 아뢰어라.”¹³⁾

[1517] 대사간 문근이 아뢰었다. “… 신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외방의 궁벽한 여염 가운데에 생원·진사로서 과거 공부에 매달리지 않고 예법의 일에 마음을 쓰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사람을 한 고장의 학장으로 삼으면 사람들이 다 덕을 밝히고 수업할 것이며, 관찰사가 그 고을을 순행할 때에 평일에 읽은 글을 강론시켜서 능한 자는 포상하고 능하지 못한 자는 처벌할 것입니다. … ”¹⁴⁾

所 人材之作 皆由於斯也.

11) 『중종실록』(1516.5.30.): … 應箕曰 館學儒生 本有額數 古有童蒙訓導 此禮曹之所當檢也 外方村落 亦置學長 可也.

12) 『중종실록』(1516.11.4.): … 司經奇遵曰 … 大抵人才 自少時培養 以爲他日之用 國家初設童蒙學 其意在此 而今則不見 所當申明 安國曰 童蒙學 乃是根本 至爲有益 其學自祖宗朝設立 今之爲訓導者 雖只四人 遞兒薄祿 輪遞受之 誰能力於教誨乎? 西班無用之人 食祿者尙多 移其遞兒 加給勸之 則庶可勉力矣.

13) 『중종실록』(1516.11.6.): 敎禮曹曰 童蒙學之設 切於開蒙 有補敎學 加給遞兒 興勸節目 磨鍊以啓.

14) 『중종실록』(1517.8.22.): 大司諫文瑾曰 … 臣之意以爲 外方窮巷之中 生員·進士之人 不事學業 用心於禮法之事者 亦多有之 舉如此之人 以爲一鄉之學長 則人皆考德問業 而監司巡行其邑 講論平日所讀之書 能者賞之 不能者罰之 …

한성의 동몽학은 예조가 검찰하며 서반의 체아직 일부를 동몽훈도에게 이관하여 동몽교육을 권장하도록 하였고,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관할하여 생원·진사 가운데 적합한 인물을 각 지역의 학장으로 삼는 한편 순행할 때에 고강하여 성적에 따라 상벌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경향의 교수요원에 대한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당시 향촌교육조건을 변화시킨 중대한 요인이 더 있었다. 그것은 『소학』·『삼강행실』과 아동교육에 대한 강조 및 언해서 간행의 활성화이다.

[1516]예조에 전교하였다. “... 『소학』을 아직 숭상하지 않는 습속이므로 공사(公私) 간에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희소할 것이니 시급히 인출하고 널리 반포하여 경외(京外)의 학교와 시골 촌락에 이르기까지 학습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스승이 후진들을 가르치고 부형이 자제들을 교훈할 때나 조정에서 선발고시를 시행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소학』에 의거하도록 하라. ... 나의 지극한 이 뜻을 체득하고 중외(中外)에 효유하여 『소학』이 공사간에 널리 퍼지도록 하고, 학습을 권장하는 절목 및 생원·진사 복시 때에 엄격하게 고강하는 것을 거듭 밝히는 절목을 모두 상세하고 치밀하게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라.”¹⁵⁾

[1517.8.27.] 장령 정순봉이 아뢰었다. “... 근래 『속삼강행실』을 널리 반포하였고, 또 『소학』을 인쇄하여 반포하려 하나 배우는 자가 없습니다. ... 나이가 어린 무리라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가르치게 해야 합니다<『소학』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¹⁶⁾

[1517.8.30.] 전교하였다. “... 동몽을 가르치는 스승이 여항간에 많이 있도록 하여 어릴 때부터 강독하는 일과 이에 따라 학관(學館)에 오르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라.” ... 우의정 신용개가 아뢰었다. “... 국도로부터 여항에 이르기까지 다 학당이 있으니, 큰 고을이라면 면마다 학장을 두어 『소학』의 도를 가르쳐 못사람에게 이를 거치도록 하면 사람들이 다 자연히 성취하여 교화가 절로 아름다와질 것입니다.”¹⁷⁾

15) 『중종실록』(1516.11.6.): 敎禮曹曰 ... 『小學』之書 既爲時習所不尙 公私藏儲 亦必稀少 其速廣行 印頒 使京外學校 以至鄉閭村巷 無不得以學習 師長之誨後進 父兄之訓子弟 朝廷之取選試 率以是爲急 ... 其體予至意 曉諭中外 使『小學』之書 公私廣布 崇勸學習節目 及生員·進士覆試申明嚴講節目 皆詳盡磨鍊施行.

16) 『중종실록』(1517.8.27.): 掌令鄭順朋曰 近來廣頒『續三綱行實』 又將印頒『小學』 然無有學之者 ... 若年少髻稚之徒 則當不分貴賤而使教之<言教『小學』也>.

17) 『중종실록』(1517.8.30.): 傳曰 ... 使童蒙訓誨之師 多列閭巷 自童稚講事 以此陞於學館事 議啓. ... 右議政申用漑曰 ... 自國都以及閭巷 皆有學 若大邑則面面置學長 以教『小學』之道 與衆由之 則人皆自然成就 而教化自美也.

거주지와 처지를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어릴 때부터 『소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범국가적인 움직임은 중앙과 지방 곳곳의 교육조건 내실화에 일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더욱이 이때 『소학』을 전국에 유포하는 일은 매우 적극적이었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우선 교서관으로 하여금 2,000건을 인쇄하여 한양과 지방에 내렸고, 더 나아가 『소학』 판본이 있는 지역에서는 관찰사가 인쇄하여 널리 유포하도록 하고, 판본이 없는 지역에서는 새로이 판각하여 『소학』을 인쇄·유포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때도 『소학』 유포 사업이 지방의 학장까지 이르도록 하라는 지침은 여전하였다.¹⁸⁾

이미 성종조부터 『소학』과 더불어 『삼강행실』이 강조되었는데,¹⁹⁾ 이때의 『삼강행실』도 여항의 우민들까지 알기 쉽도록 언해한 것이었지만, 중종조에 그 속편을 찬술할 때는 글씨체가 너무 작은 점을 개선하여 큰 글씨체로 인쇄함으로써 보기에 편하도록 하였다.²⁰⁾

나아가 이런 조치가 향약의 보급과 맞물려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극인(1401-1481)이 태인현감 시절 향약[古縣洞鄉約]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나, 그 시행 지역이 더욱 더 넓어지기 시작한 것은 김안국(1478-1543)이 경상감사 재임시절 1517년에 『여씨향약』을 언해·간행하여 반포한 이후이다.²¹⁾ 그는 『여씨향약』뿐만 아니라, 『정속(正俗)』·『이륜행실』·『농서』·『잠서』·『벽온방』·『창진방』 등의 서적을 언해·간행하여 반포하였고,²²⁾ 이듬해 경상감사에서 체임한 다음 조정에 건의하여 각 언해서의 교

18) 『경북향교집성 I』 「경주향교」 學令: 傳旨 … 小學段 養蒙正俗最爲根本 當先訓誨是去乙 … 須要廣布中外爲乎事是昆 二千件 令校書館印出 內而成均館·四學·公卿大夫·士及童蒙學是沙餘良 外而州府郡縣學校·學長惠是磨鍊廣布爲乎矣 外方 有印本各官乙良 令本道觀察使多數印出廣布 學習以興孝悌之風爲旣 成均館·四學月講曾讀乙良 式爲小學試講 童蒙學乙良置 曹以時不定考講以考勤慢 外方乙良 令觀察使考講 勸獎爲乎矣 … 何如啓 聞行下向事牒呈據議政府啓目粘連牒呈是白有良余 牒呈內貌如施行爲乎矣 板本所無各道 以開刊印出廣布 何如 正德十一年(1516)十一月十三日 啓依允.

상기의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지 않다.

19) 『삼강행실』을 언해하여 전국 각 지역의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가르치라는 조치는 법전인 『경국대전』(1485, 성종16)에도 실려 있다.

『경국대전』 「예전」 獎勸: 三綱行實翻以諺文 令京·外士族家長·父老或其教授·訓導等 教誨婦女·小子 使之曉解 若能通大義有操行卓異者 京漢城府·外觀察使啓聞行賞.

20) 『중종실록』(1514.4.2.): 傳曰 『三綱行實』續撰時 祖宗朝及反正後事 竝令撰集 祖宗朝所印 欲使閭巷愚民 皆得易知 故用諺字翻譯 但字體微小 今以大字印出 以便觀覽.

21) 이는 『주자증손여씨향약』의 언해본이며 이를 교정하여 1518년(중종 13년) 전국에 반포한 언해본이 『朝鮮時代 社會史研究史料叢書(一) 鄉約』에 실려있다.

22) 김안국의 언해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

지정민(1996), 조선전기 서민 문자교육에 관한 연구-慕齋 김안국의 교화서 언해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6·7집, pp.104-116.

정본을 전국에 간행·반포하도록 하였다.²³⁾ 이 언해서들 가운데 『여씨향약』은 곧바로 충청도에서도 가르치고 어린 아이들까지 읽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²⁴⁾ 다소 논란이 일기는 했으나 결국 명종조 이후 경향을 막론하고 전국에 유포되었다.

교수요원을 맡을 만한 인물들이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더라도, 가르칠 교재에 대한 언해서 특히 한자를 익히는 문자학습서가 부재했다면 이들 교수요원들의 동몽 교육에 대한 성과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언해본이 학습에 의의를 가지려면 학도들이 한글을 익혀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자로 된 문장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양대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자학습서 『훈몽자회』(1527)가 등장하였다.²⁵⁾ 즉 한글을 깨우침으로써 한자를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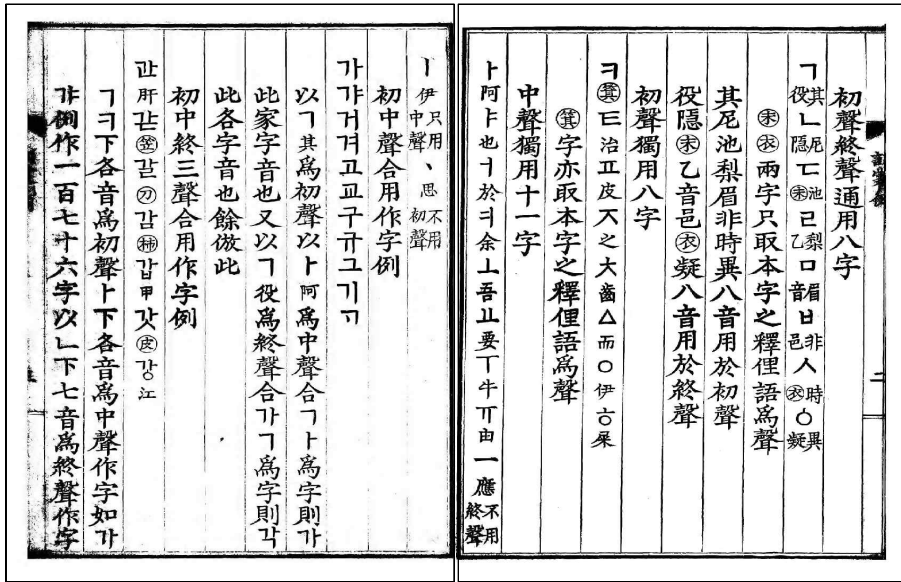
최세진(?-1542)은 『훈몽자회』 「범례」에 다음과 같은 기대를 적어 놓았다.

시골 변두리 지역 사람들 경우에는 언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언문자모」를 함께 적어 놓아 그들로 하여금 먼저 언문을 배운 다음 이 『훈몽자회』를 공부하게 하면, 대체로 밝게 깨우치는 데 유익할 것이다. 한자를 모르는 사람도 역시 모두 언문을 배우고 『훈몽자회』를 알면, 비록 스승의 가르침이 없더라도 한문에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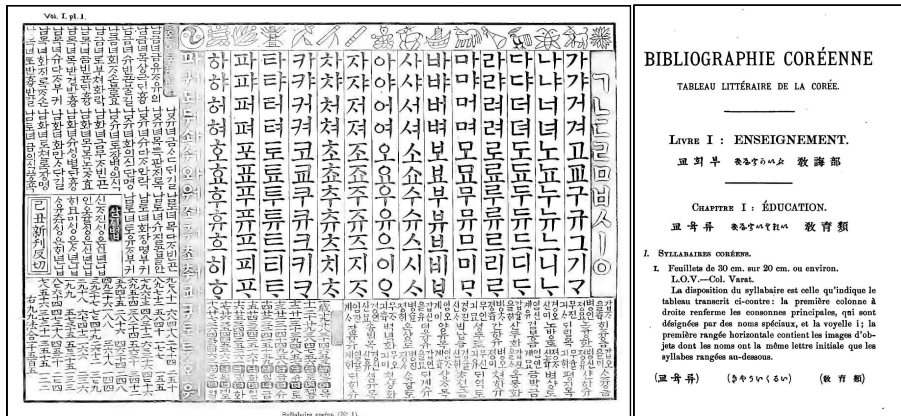
그는 「범례」의 말미에 「언문자모」를 부기해 놓음으로써 이를 통해 먼저 한글을

-
- 23) 『慕齋先生集』 권15, 「附錄」 先生行狀: (正德)十二年丁丑(1517) … 拜慶尙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 … 手撰二倫行實 又諺解呂氏鄉約·農蠶書·辟瘟方·瘡疹方 刊印頒布 …
『중종실록』(1518.4.1.): 同知中樞府事金安國啓曰 臣爲慶尙道觀察使 … 取古人之書, 可以善俗者 詳加諺解 頒道內以教之 … 『鄉約』 … 故臣乃詳其諺解 使人接目便解 『正俗』亦繙以諺字 如農書·蠶書 乃衣食之大政 故世宗朝翻以俚語 開刊八道 … 故臣亦加諺解 如『二倫行實』 … 故臣依『三綱行實』 撰類以刊之 如『辟瘟方』 … 故在世宗朝 重惜人命 繙以俚語 印頒中外 … 故臣亦加諺解以刊 至如『瘡疹方』 曾已翻譯開刊 而不頒布于中外 … 故臣往慶尙道時賣去 刊印於本道 已頒布矣 願依成宗朝廣頒『救急簡易方』例 多印廣布 傳曰 卿在其道 盡心於學校·轉移風俗之事 予聞之嘉美 又復撰此等書以教之 此書皆有關於風教 其下撰集廳 開刊廣布.
- 24) 『중종실록』(1518.4.1.): (弘文館應教)韓忠曰 臣見忠清監司 刊印『呂氏鄉約』 以教鄉中年少之士 … 監司又擇其耆老 爲一鄉之所推者 爲都約正·副約正 以興勵一鄉 其所以善俗作民之道 無過於此 臣見鄉中小兒所讀『鄉約』 乃金安國所校諺解者也 須廣印『鄉約』 頒于八道可也.
- 25) 세조대에 『初學字會』라는 문자학습서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전해지지 않아서 그 실체를 알 수 없다. 『훈몽자회』의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
장정호(2006), 조선시대 독자적 동몽 교재의 등장과 그 의의 -『훈몽자회』와 『동몽선습』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0권 1호, pp.171-179.
- 26) 『훈몽자회』 「범례」: 一.凡在邊鄙下邑之人 必多不解諺文故 今乃并著諺文字母 使之先學諺文·次學字會 則庶可有曉誨之益矣 其不通文字者 亦皆學彥而知字 則雖無師授 亦將得爲通文之人矣.

익히고 나서 『훈몽자회』에 실린 글자마다 달려 있는 한글주해를 보고 한자의 음과 뜻을 익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자를 조금이라도 아는 자는 그 이해가 더 명료해질 것이고, 아예 한자를 모르는 자라도 거들어 주는 이 없이 한자에 통할 수 있다고 했다. 번다한 「훈민정음해례」를 간략한 「언문자모」로 요약해 놓아서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했기에 이러한 기대를 가졌던 것이다.



<그림2> 『훈몽자회』의 「諺文字母<俗所謂反切二十七字>」



<그림3> 『Bibliographie Coréenne, T.1』(M. Courant, 1894)에 실린 반절(反切)표

「언문자모」는 최초의 작성 주체와 시기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인데, 『훈몽자회』 간행 이전부터 향간에 유포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²⁷⁾ 그 여부와 무관하게 이는 언해서가 활발하게 출간되던 시기에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핵심적 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도 이와 비슷하게 한글을 깨치는 데 필요한 표를 만들어 유통시켰다.²⁸⁾ 이를 언본(諺本) 또는 언반절(諺反切)·반절(反切)이라고 했는데, 모리스 쿠랑(M. Courant)의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ne) 제1책(1894년) 제1권 제1장 교육(Education) 직전에 반절표(syllabaire coréenne)가 실려 있어 국제적으로 알려질 만큼 유명한 한글학습 도구였다. 이는 쿠랑의 『한국서지』 시리즈(1·2·3책과 보유편까지 모두 4책)에 실린 맨 첫 번째 도판이며, 이 반절표는 시장에서 판매되던 1889년(좌측 하단부에 “己丑新刊反切”이라는 표기가 보인다) 방각본이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또다른 중요 내용은 「범례」의 맨 마지막 조항인데, 『훈몽자회』를 각 지방에 배포하여 학장으로 하여금 어린이들을 가르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최세진의 권고이다.²⁹⁾ 향촌에서 어린이[幼穉]를 가르치는 학장의 설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명종이 등극한 직후에(1546) 반포된 전국의 학교를 망라하는 절목(이른바 「경외학교 절목」)을 전후로 해서 조선의 향촌교육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보이게 된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은 흐름과 기조를 통해서 조성된 것이다. 「경외학교절목」이 나오게 되기까지의 실록기사를 향촌교육에 관한 것 위주로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546.2.] … (지경연사 이언적이) 또 아뢰었다. “우리나라는 촌향(村巷)에 소학당이 있어왔고 중종조에도 의논하여 설치하였는데,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 시골의 후생들이 지향할 바를 모르고 있으니, 신정(新政)초에 마땅히 예전 규례를 회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고 배울 바를 알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 당학(黨學)에서 성취된 자를 주학(州學)으로 올리고 주학에서 성취된 자를 국학(國學)으로 올린다면 쓸만한 인재가 조정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³⁰⁾

27) 강창석(2014), 諺文字母의 작성 주체와 시기에 대하여, 『언어와 정보 사회』 제22호.

28) 백두현(2007), 한글을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 사람들의 문자생활, 『서강인문논총』 제22집.

29) 『훈몽자회』 「범례」: 一.凡在外州郡 刊布此書 每於一村一巷 各設學長 聚誨幼穉 勤施懲勸 竣自成童 升補鄉校·國學之列 則人皆樂學 小子有造矣.

30) 『명종실록』(1546.2.30.): … (知經筵事李彦迪)又曰 我國於村巷 嘗有小學堂 中宗朝亦已議置 今則廢矣 鄉曲後生 不知所向 新政之初 宜復舊規 使人人知所從而學也. 然後黨學之成就者 陸之於州學 州學之成就者 陸之於國學 則人材滿朝 濟濟可用矣. …

상기의 기사는 소학당-당학-주학-국학 체제의 구상을 담고 있으나, 아직 이 정도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조건이 각 지방에 마련되기는 힘들었을 것이고, 몇몇 리(里)를 아우르는 교육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편이 현실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이런 구상이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1546.6.3.] 참찬관 김익수가 아뢰기를, “ … 시골에서는 배울 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가르칠 만한 스승이 없으면 끝내 배울 수 없습니다. 만약 몇몇 마을의 동몽들을 한 데 모아 한 명의 스승을 두어 가르치게 하면 아마 인재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³¹⁾

([1546.6.10.]어제의 의득단자(議得單子)를 원상 정순봉에게 내리고 이르기, “ … 관찰사가 각 읍을 순행하여 『소학』으로써 권장하거나 징벌한다고 했으니, 이것은 각 읍 향교의 일을 말한 것이고 궁벽한 시골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을 말한 것은 아니다. 궁벽한 시골이라고 해서 어찌 글을 아는 자가 없겠는가. 각 여러(閭里)에서 글을 아는 자를 택하여 학장으로 삼아 천·서(賤·庶)를 막론하고 깨우치게 하라. 가르치는 절목은 예조가 상세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 ”³²⁾

[1546.6.16.] 예조가 아뢰었다. “여향(閭巷)의 소민(小民)을 가르치는 일을 지금 마련해야 마땅합니다만, 지난 4월 외방의 학교에 신명(申明)한 절목 안에 소민을 가르치는 뜻이 갖추어 있으니 관찰사로 하여금 이것을 권장하게 하소서. … ”<예조 사목: … 동몽훈도에 합당한 사람은 사족과 서얼을 막론하고 현재의 6인 이외에 4인을 더 증설하여, 사족과 범민의 자제 중 8·9세에서 15·16세에 이른 자를 모아 놓고 먼저 『소학』을 가르쳐 구두(句讀)에 밝고 문리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된 다음에 『대학』·『논어』·『맹자』·『중용』을 차례로 가르쳐서 사학으로 올라가게 한다. 예조는 분등(分等)마다 고강하여 훈도의 근만(勤慢)을 알아서 정·종9품에서 각각 1품씩을 올리거나 내려서 제수하여 가르치기를 권면한다. 외방은 시골마다 학장을 두어 위의 예에 의하여 가르쳐 향교에 오르도록 한다. 감사가 순행할 때 제일 부지런한 학장을 점검·천거하여 마땅하게 논상하고 공부하는 것을 권면했는지 여부를 인사고과에 근거자료로 삼는다>.³³⁾

31) 『명종실록』(1546.3.13.): 參贊官金益壽曰 … 鄉閭之間 雖有可學之人 無可教之師 終不能學 若合數里童蒙 立一師而教誨之 則庶可以振作人材矣.

32) 『명종실록』(1546.6.10.): 以昨日議得單子, 下于院相鄭順朋曰 … 監司巡到各邑 以『小學』爲獎罰云 此則言其學校之事 而不言村巷教之之方矣 雖窮村僻巷 豈無解文者乎? 各於閭里 擇其解文者 以爲學長 勿論賤庶*而使之開蒙 教誨節目 令禮曹 詳細磨鍊可也 … (* 원본에는 “擇其解文者 勿論賤庶 以爲學長 而使之開蒙”이라고 되어 있으나 착간이라고 판단하여 “擇其解文者 以爲學長 勿論賤庶 而使之開蒙”로 순서를 바꾸었다).

33) 『명종실록』(1546.6.16.) 「경외학교절목」: 禮曹啓曰 閭巷小民教誨事 今當磨鍊 而前於四月 外方學校申明節目內 教誨小民之意 備在矣 請令監司 以此勸獎. … <禮曹事目: … 童蒙訓導可當人 勿

예전 규례를 회복하자는 것, 궁벽한 시골의 동몽에까지 교육력이 미쳐야 한다는 점 등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강조되고 있다. 「경외학교절목」(1546)은 이러한 흐름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고, 향후 여항에서 동몽을 가르치는 학장은 더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건의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연한 존재로 설정된다.

앞서 논의했듯이, 『여씨향약』이 결국은 전국에 유포되었다고 했는데, 임진왜란 직전에 『여씨향약』 책자를 전국에 배포하는 정황을 보면 지방에 군현의 향교뿐만 아니라 시골 학장에 이르기까지 널리 내려 보내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즉 군현 하부단위에서 활동하는 교수요원의 편제를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1573.8.17.] 판부사 이탁의 의논에, “... 신의 생각으로는, 이 책(『여씨향약』)을 많이 인쇄하여 전국에 널리 나누어 주되 서울에서는 동몽학 외방은 향교에서 시골의 학장에 이르기까지 다수에게 내려 주어, 배우는 자가 글을 읽는 여가에 이 책을 버려두지 않고 때때로 보게 하도록 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다 스스로 닦는 도리를 알 것이며 백성의 풍속도 또한 이로 인해 변해 갈 것입니다. ...”³⁴⁾

[1573.8.22.] 예조에 전교하였다. “『여씨향약』의 글은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룩하는 데에 가장 절실하니, 먼저 이 책을 많이 인쇄하여 전국에 널리 나누어 주되 서울에서는 동몽학 지방은 향교부터 시골의 학장에 이르기까지 다수에게 내려 주어 사람마다 볼 수 있게 하여, 스스로 닦는 도리를 알고 혹 그 절차를 모두 따르거나 또는 그 절차를 대략 본떠서 준수하여 폐기하지 말고 꾸준히 행하여 인륜을 도탑게 하고 풍속을 이루는 데로 나아가게 하라.”³⁵⁾

상기의 기사에서 시골의 학장(村巷學長)은 문자 그대로 벽촌에서 활동하는 교수자이다. 이들 가운데서 몇 개의 리(里)를 아우르는 교육네트워크를 관할하는 각면학장의 직책을 맡았을 것이라고 본다.

論士族·庶孽 見設六員外 加設四員 聚士族及凡民子弟 年自八·九至十五·六歲者 先誨『小學』能明句讀稍解文理 然後次教以『大學』·『論語』·『孟子』·『中庸』 陞之於學 禮曹以每等考講 知訓導勤慢正·從九品各一 加給陞降除授 以勸訓誨 外方則每鄉置學長 依右例教誨 陞之鄉校 監司巡行時 檢舉學長最勤者 隨宜論賞 用意勸課與否 殿最憑考>.

34) 『선조실록』(1573.8.17.): 判府事李鐸議云 ... 臣意以爲 命印此冊多有件數 廣頒中外 京則童蒙學外則鄉校至於村巷學長 多數頒給 使學者 讀書之暇 亦不可廢此冊 時加覽閱 則人皆知自修之道 民風俗習亦 或因此而向變矣 ...

35) 『선조실록』(1573.8.22.): 傳 『呂氏鄉約』之書 最切於化民成俗 先爲印出此冊 多其件數 廣頒中外 京則童蒙學 外則鄉校至於村巷學長 多數頒給 使人人皆得閱覽 知其自修之道 或盡從其儀 或略倣其儀 遵而勿廢行之 有漸以致厚倫成俗之效事 下禮曹.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군현단위 학교인 향교 이외에 향촌의 교육시설에서 활동하는 교수요원의 존재는 이미 조선전기에 상식적인 것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전기에 동몽을 가르치는 교수자들이 각 지방에 엄연히 존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사가 있다. 조현이 질정관으로 명나라를 다녀온 다음에(1574) 중국의 제도·문물을 소개하는 글을 선조한테 올렸는데, 그 가운데 “능선생원(廩膳生員)”이라는 생소한 직책에 대해 주석을 달아 놓았다. 즉, 중국의 능선생원을 조선의 벽촌 학당의 훈도나 동몽학장과 같다고 풀이하고 있다.³⁶⁾

임란 이전의 이러한 향촌교육 상황은 양란을 거치면서 황폐화되어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³⁷⁾ 종래의 교육적 조건을 회복하려는 노력과 결실은 왜란 이후 호란 사이에도 있었으나 온전한 복구는 병자호란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다.

Ⅲ. 조선전기 향촌교육 시행사례

조선전기 향촌의 교육 실태를 살펴보는 일은 개인적인 체험사례와 향촌교육에 활용된 시설을 가급적 많이 검토·확인해 보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우선 개인적인 사례를, 배우는 입장과 가르치는 입장으로 나누어 자료를 추출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자료를 검토할 때, 상당히 많은 경우 누구의 문하에 취학하였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다. 초기에 조부나 부친한테 배우다가 조금 성장해서는 인근의 선비한테 나아가 배웠다는 것이다. 이런 기사들은 대부분 본인이 개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드러나 있을 뿐이지만, 드물게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과의 일화를 전하는 기사를 접할 수 있다. 즉, 당시 향촌에서 벌어졌던 동몽에 대한 집체교육의³⁸⁾ 일단을 보여주는 창이 있다는 것이다. 몇 몇 인사의 수학상황을 통해 조선전기 집체교육 사례를 살펴보자.

36) 『重峯先生文集』 권3, 「疏」, 質正官回還後先上八條疏<甲戌十一月> 師生相接之禮: … 廩膳生員 <諸生之中稍解經義者 名爲廩膳生員 官給月科一石 俾教童蒙 如我國外方之闔學訓導·童蒙學長然> 『선조실록』(1574.11.1.)에도 동일한 문건이 실려 있으나 “廩膳生員”에 대한 이런 주석은 없다.

37) 『선조실록』(1600.2.10.): 司諫院來啓曰 亂離以後 凡係文教 廢而不學 中外人心 悶嘆久矣 況導率之方 莫先於訓蒙 必須及時教育 然後方可成就 近來輦轂之下 童弗之聰敏可教者 無所就傳 雖志于學 而過時虛棄者亦多矣 … ; (11.25.): 諫院啓曰 爲政之本 莫先於教養士子 而亂離以後 學校之制 頽廢已久 幼學之士 無所係屬 風習之儉薄, 日甚一日, 有識之寒心極矣.

38) 하나의 교과서를 놓고 모든 학생이 동일한 내용을 학습하는 일제교육과는 다르다.

김중직(1431-1492)의 부친 김숙자(1389-1456)는 9세에 아버로부터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하여 12세(1400)부터는 야은 길재(1353-1419)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15세에 향교에 들어가 공부하였다.³⁹⁾ 길재의 문하에서 수학한 상황을 살펴보면 김숙자 이외에도 학동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한다(卜築金烏山下 教授子弟 童叟雲集 … 公亦往受業焉). 조선초부터 어린 학동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집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길재의 문집에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금오산 아래에서 군(郡)의 생도들을 모아 가르쳤는데 상하재로 양분하여 가르쳤다는 것이다. 벌열의 후예들은 상재, 한미한 가문 출신은 하재로 나누어 상당히 많은 학도들에게(受業者 日以百數) 경학과 역사를 가르쳤다.⁴⁰⁾

한강 정구의 형 정곤수(鄭峴壽, 1538-1602)는 성주에서 태어나 6세에 한양으로 올라가 공부했는데, 그의 종숙부 정승문(鄭承門)이 후사(後嗣)로 삼기 위해 불러들인 것이다.⁴¹⁾ 그는 11세(1548)부터 이중호(1512-1554)라는 인물의 가숙에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돌림병으로 인해 임시거처로 피해 있을 때는 이웃의 고응벽 학장한테 배웠다고 했다. 고응벽 학장한테 배울 때 글짓기를 하면 같은 반[同隊] 여러 아이들 중에서 정곤수가 번번히 수석을 차지했다는⁴²⁾ 기사를 통해서 고응벽의 문하생이 꽤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중호의 가숙에도 역시 많은 학동들이 출입했다는 것을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그의 줄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중호는 왕실종친 이억손의 열자(婢妾의 소생)이고 몹시 가난했으나 문장과 경학에 능하여 배우러 오는 학도들이 많았다(諸生遊門下者 日常數百人).⁴³⁾

39) 『佔畢齋集』 「彝尊錄下<子通訓大夫前善山都護府使宗直撰>」, 先公事業第四: … 九歲 始讀書 進士公嘗口授千字文 公少懈出嬉戲 進士公以楚警之 … 及年十二·三 鄉先生吉公再 以嘗仕高麗 辭祿於本朝 累徵不起 卜築金烏山下 教授子弟 童叟雲集 其教自洒掃應對之節 以至蹈舞詠歌. 不使之躐等 公亦往受業焉 及十五·六 隸于鄉校.

40) 『治隱先生續集』 卷之下, 附錄, 請陸應疏<徐有鐸>: 四學儒生幼學臣徐有鐸等 … 謹百拜上言于主上殿下 … 吉再爲能復古禮而勸後學 退居于金烏山下 聚郡中生徒 分爲兩齋 以閭閻之裔爲上齋 以鄉曲賤[殘]族爲下齋 教以經史 課其勤惰 受業者 日以百數 … .

41) 『栢谷先生年譜』: (皇明世宗皇帝嘉靖)二十二年<我中宗大王三十八年>癸卯(1543)<先生六歲> 春自星州入漢師好賢洞<議政公定欲爲後而率來>○始受學. 二十五年<我明宗大王元年>丙午(1546)<先生九歲> 先生出爲從祖叔父議政公后.

42) 『栢谷先生年譜』: 二十七年<我明宗大王三年>戊申(1548)<先生十一歲> 往學于素履齋李公仲虎(1512-1554)家塾<先生嘗避癘僑寓 隣有學長高應璧 先生往從之學 爲詞章 在同隊群兒 輒居首 聲名日振>.

43) 『명종실록』(1554.11.26.): 司果李仲虎卒 仲虎 字風后 號履素齋<宗室高陽副正·億孫之孽子也> … 諸生遊門下者 日常數百人 皆令先讀『小學』 以爲基本之地 端拱揖讓 出入里閭 不問其姓名 皆知爲仲虎之門人也 家至貧 不給朝夕 而處之裕如也 今上朝 言官力薦 使給六品祿 以教諸生 是年卒

조헌(1544-1592)은 집이 몹시 가난하여 손수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⁴⁴⁾ 5세에 정자에서 여러 아이들과 함께 『천자문』을 읽었다는 기록이 있고, 12세(1555년)부터 김황(金滉, 1549년 생원, 1566년 문과)에게 배우기 시작했는데, 인근에 사는 동무들과 함께 공부하였다.⁴⁵⁾ 1555년이면 김황이 소과에 합격하고 문과에 급제하기 이전인데, 그는 생원으로서 인근의 학동들을 가르쳤던 것이다.

동몽에 대한 집체교육의 사례는 개인의 수학상황을 기록한 것보다는 개인의 교수 활동 기록을 통해 접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경우는 조선초의 『세종실록』 기사에서도 접할 수 있다.⁴⁶⁾

지성균관사 허조 등이 상언하였다. “가만히 살펴보건대, 삼대(三代)에 사람을 가르치는 법은 집에는 숙(塾)이 있고 당(黨)에는 상(庠)이 있었으니, 이것은 곧 처음으로 배우는 자들을 계몽하는 장소입니다. … 우리 성조(盛朝)에 들어서 더욱 문교를 닦아 서울에는 국학을 세우고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했으니, 학교를 널리 설치한 것이 이와 같기는 하지만 가숙·당상의 법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사(儒士)가 사사로이 서재를 설치하여 생도를 가르친 사람이 있으면 계문하여 포상하는 법이 『속전』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 유생 유사덕이 자기 집을 서재로 삼아 어린 아이 수십 명을 모아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으며, 또 경상도 용궁 사람 전감무(監務) 박호생도 사사로이 서재를 설치하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친 지 1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 ”

불우현 정극인(1401-1481)의 태인에서의 교육활동도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그는 처향인 태인에서 가숙을 세워 학동들을 가르쳤는데, 그가 제정한 학령을 보면 매우 엄격하게 지도했음을 알 수 있다. 정극인의 교육활동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향약[古

年四十三 … .

44) 『重峯先生文集附錄』 권4, 「碑表」, 遺事: … 憲 字汝式 號重峯 本高麗忠臣元帥天柱之後 家貧自業農畝 憲 兒時自力受書 … 右六條 見澤堂<李植>史草.

45) 『重峯先生文集附錄』 권1, 「年譜」:

二十七年戊申(1548) 先生五歲 先生與群兒讀千字文於林亭 …

三十年辛亥(1551) 先生八歲 先生天性孝順 秉執純固 家本田農 不隨群兒爲戲. …

三十四年乙卯(1555) 先生十二歲 始受詩書于漁村金公滉字浩然 先生嗜學篤至 雖隆冬盛寒 衣履盡弊 而忍凍從師 不避風雪 每值禾熟 以親命守宿田間 隣兒同學者從之 夜各倍誦所讀書 至夜深 諸兒皆倦睡先臥 先生獨誦不輟 久方假寐 鷄鳴又起誦之 隣兒每恨其不及 …

46) 『세종실록』(1418.10.8.): 知成均館事許稠等上言曰 竊觀三代教人之法 家有塾·黨有庠 此乃初學之士發蒙之所也 … 及我盛朝 益修文教 內建國學 外設鄉校 學校之廣如此 唯家塾·黨庠之法 未之行也 故儒士私置書齋 教誨生徒者 啓聞賞之之法 載諸『續典』 今儒生劉思德 以其家爲書齋 聚童蒙數十輩 教誨不倦 又慶尙道龍宮人 前監務朴好生 私置書齋教誨童蒙者 蓋亦十餘年矣 … .

縣洞鄉約]을 시행했다는 것과 그가 세운 서재가 후에 송세림(宋世琳, 1479-?, 1498년 진사, 1502년 문과)에 의해 향학당으로 발전하였고,⁴⁷⁾ 신잠(申潛, 1491-1554, 신숙주의 증손자)이 태인현감으로 재직한(1543-1549) 시절에 이 향학당을 바탕으로 동·남·중·서·북의 오학당을 세워 운영했다는 것이다.⁴⁸⁾ 여기서 말하는 향학당은 앞 절에서 「경외학교절목」(1546)이 마련되어 반포되기 직전의 의논을 소개할 때 등장한 소학당과 유사하다고 추정된다. “우리나라 촌향(村巷)에 소학당이 있어왔고 중종조에도 의논하여 설치했었다”(我國於村巷 嘗有小學堂 中宗朝亦已議置)는 것이다. 이런 이언적의 발언에 해당하는 소학당의 존재는 성종조 경주부에서도 확인된다. 1473년 10월에서 1476년 2월까지 경주부윤을 지낸 양순석이 소학당을 중수했다고 되어 있고, 학식이 있는 자를 스승으로 삼고 동몽들을 모아 가르치게 했다는 것이다.⁴⁹⁾

특히 향약의 시행이 가숙 운영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은 이후의 사례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조선전기 향촌에서의 교육활동이 국소적 현상에 그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향약과 연계된 교육은 그 처지와 거주지에 따라 특정한 부류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덕업상권, 예속상교, 과실상규, 환난상휼. 이는 일부 특정 집단에게만 부과된 과제가 아니다. 서로 함께 잘 살아갈 길을 닦으려면, 그 출발점은 어릴 때부터 행실을 올바르게 하도록 가르치는 데 있다.

어린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 자라는데 안일하게 지내기만 하고 가르침이 없으면 장차 행실이 어긋나도 바로잡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서당을 열어 어린이를 깨우치는 법을 엄하게 하였고, 또 향음주례를 정하여 이웃 간에 화목을 도모하는 규정을 세웠다. 예(禮)의 문(文)·기(器)·용(用)을 비록 모두 다 고법(古法)에 합치되게 할 수는 없지만, 공경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쳐 결(潔)·효(孝)·제(悌)·손(遜) 등은 준수하고 잃지 말아야 할 것이며, 사치함이나 음란함에 눈뜨게

4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4, 「태인현」, 학교: … [新增]鄉學堂 在縣東二十里 正言丁克仁始設家塾 後縣人宋世琳重恢其制 建講堂 東西有齋舍 常聚學徒教誨焉.

48) 정극인의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정순우(2013), 여말선초의 사치학당, 『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pp.60-65.

박종배(2013), 불우헌 정극인의 태인에서의 교육활동과 그 의의, 『한국교육사학』 제35권 제4호, 교육사학회.

49) 『東京通志』 권6, 「학교」: 小學堂 在府東二里 府尹梁順石(1453문과, 1473.10.15.-1476.2.27.재임)重修 擇有學術者爲師 聚童蒙訓誨.

『東京通志』 권9, 「歷代守官」: 府尹梁順石<癸巳十月十五日 到任 丙申二月二十七日 以僉知中樞上京>

되거나 욕심이 방자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삼가해야 할 것이다. … 성화11년 을미년(1475, 성종6) 10월 일 동네노인 정언 정극인이 서문을 적다.⁵⁰⁾

앞 절에서 김안국이 경상감사 시절 『여씨향약』을 언해하여 관내에 유포시켰고, 이듬해 조정에 건의하여 그 교정본을 전국에 반포한 것이 본격적으로 향약이 퍼지게 된 시발점이라고 했다. 그런데 향약이 향교나 서당과 연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김안국이 1517년 경상도에 『여씨향약』 언해본을 반포한 이듬해에 경주부윤 김안로(金安老, 1481-1537, 1518.9.1.-1519.10.8.재임⁵¹⁾)가 경주부 관내에 내린 칙문을 보면, 정극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향약과 학교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칙문의 제목이 「경주의 향약과 향교의 제생에게 내리는 칙문」(慶州約·鄉校諸生帖)이고 수신자는 경주향교 및 각면 동몽학(右下府校暨各面童蒙學)이다. 아쉽게도 당초 김안로가 이 칙문에 첨부했던 약조(學中之約條)가 그의 문집에 실려 있지 않아서 어떤 조문을 담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이 칙문이 향약 조직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부윤이 내린 칙문을 수신할 동몽학이 경주부의 각 면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⁵²⁾

경상도 의성지역에서 박승(朴承, 1520-1577)이 주도하여 운영한 구고서숙(九臯書塾)은, 현재까지 접할 수 있는 사례로서는, 학도들을 모아 가르친 가장 구체적인 조선전기의 사례일 것이다. 그는 1561년 자택 부근에 서숙을 세워 밭과 곡식, 기금 등을 서숙의 재원으로 삼고 유사 2인과 전곡(典穀) 2인을 두는 한편 숙사(塾師) 1인을 초빙하여 학동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승 본인 또한 5일에 한 번씩 서숙에 출석하여 학동들이 공부한 바를 점검하고 논상(論賞)하였다.

구고서숙의 운영 역시 향약의 시행과 연계되어 있었는데, 그의 「유사(遺事)」에 『여씨향약』이 직접 언급되고 있다(遵藍田呂氏鄉約). 1562년 서숙의 동쪽에 재사 3간

50) 『不憂軒集』 권2, 「洞中鄉飲酒序」: … 童蒙之出 兢兢振振 逸居而無教 則將有扞格不勝之患 故既設家塾 以嚴開蒙之法 又設鄉飲 以立睦隣之規 禮之文·禮之器·禮之用 雖未能盡合於古 教敬也 教禮也 潔也孝也悌也遜也 則遵而勿失 教侈也 誨淫也 恣慾也 戒之慎之 … 成化十一年乙未(1475)十月日 洞老正言丁克仁 序.

51) 『東京通志』 권9, 「歷代守官」: 府尹金安老<戊寅九月初一日到任 己卯九月二十二日 以母喪 十月初八日去>.

52) 『希樂堂文稿』 권5, 「志<序·記并附>」, 慶州約·鄉校諸生帖: … 約與諸生 痛棄舊汚 勉加新學 體身日用之功 始之小學 窮理深造之要 根諸經傳 博聞則返諸史 餘力而游于藝 學有次第 固不可躐也 … 今將學中之約條付于左 餘具學令 新補其缺. 正德十三年(1518년, 중종13) 九月日 右下府校暨各面童蒙學.

서쪽에는 창고 4간을 증축하였는데, 각 건물마다 손수 쓴 구고서숙의 입약절목을 게시하여 약인(約人)과 학도들로 하여금 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혹 빈곤하여 의탁할 데가 없는 이가 배우고자 한다면 서숙의 재원으로 먹고 입혀 부지런히 배우도록 하여 서숙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재덕을 겸비한 인사가 많이 배출되었다고 한다. 박승은 부국안민을 위해 고민한 바로써 「농가요람(農家要覽)」과 「근잠(勤箴)」을 지어 서숙의 벽에 게시하여 학도와 약중(約中) 인물들이 조석으로 보고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⁵³⁾

구고서숙의 입약절목은 조선전기에 향촌에서의 교육실태와 향약과의 연계를 보여 주고 있는데 그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⁵⁴⁾

- 1.본 서숙은 배우려는 자를 위해 설립하였다. 배우는 자는 마땅히 규약을 정하고 계(契)를 만들며 두 개의 명부를 두어 마을의 위·아래(上·下)를 통틀어 모두 이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상자(上者) 명부는 상안(上案), 하자(下者) 명부는 하안(下案)이라 이른다. 또한 이웃 마을이나 먼 곳에서 와서 함께 하려는 자도 위·아래(上·下)에 따라 각 명부에 올린다(一.本塾既爲學者設矣 學者 當立約設契 而置二案 自里中通上下許參 其爲上者 題名上案 其爲下者 題名下案 且近里及遠方之願附者 亦隨其上下而參案事).
- 1.우리 마을 사람 가운데 부지런하고 건실한 자를 택하여 서숙의 임원으로 삼아 서숙의 재원을 불리고 적절히 사용하도록 한다(一.擇本里中勤幹者 爲塾任 塾財滋植調用事).
- 1.서숙 안에서 학업을 독려하고 행실을 규찰하는 일은 자제들 중에 성품이 둔후하며 두루 신망이 있는 연장자를 택하여 주관하게 하는데 절목에 따라 거행하도록 한다. 선적(善籍)과 불선적(不善籍) 두 개의 책자를 비치하여, 좋은 자는 선적에 좋지 못한 자는 불선적에 기재한다. 매월 말에 **숙장**은 한 달 동안 공부한 바를 평가하고 상·벌을 시행한다(一.塾中勸課·糾察事 擇子弟之年長敦厚周信者 主管 依

53) 『鶴川先生遺集』 권2, 「附錄」 遺事: … 辛酉(1561) 建書塾于宅傍越溪而九阜上 爲來學者讀書之所 … 立約 如安定胡公湖學 又聚一方大小民人 議設規例 遵藍田呂氏鄉約 而亦參古酌今 編爲一冊名曰約書增刪 嚴條約 以身先之而以化風俗. 出田一百斗 落穀一百斛 錢一百緡 附爲塾財 置有司二 典穀二 以爲滋植. 聘塾師一 以教學者 每月每五經日 而府君一出席 聽講學徒五箇日所讀 而賞罰之. 翼年(1562)春 又建齋三間于塾東而翼之 築庫四間于塾西而翼之 齋記 屬上舍金公得研作之 乃手書立約節目十條 字訓二十五條 揭諸塾堂壁 令約人及學徒常目焉. 其或有孤窮無依託處者願學焉 則必以塾財衣之食之 而使之勤學 塾不能容 而才德之士 多出於塾. 癸亥(1563) … 嘗以富國安民之策之多方研究者 至是編成爲一糾 名曰 農家要覽 又作勤箴 揭于塾壁 使學徒與約中人 朝夕視爲警. …

54) 『鶴川先生遺集』 권1, 「雜著」 九阜書塾立約節目(1562).

節目舉行 置冊子二 善者書**善籍** 不善者書**不善籍** 每月朔 **塾長**受講一朔之課 講畢施賞罰事).

1. 배우기 원하는데도 가난한 탓에 불가능한 자가 있다면 거주지의 원근, 친하거나 소원함, 집안의 한미함 등에 구애됨 없이 모두 입학을 허락하며 이들이 먹고 입는 것은 서숙의 재원으로 조달한다(一.如或有願學之人貧窮不能者 毋論遠近親疎微賤 皆許入學 衣食以塾財調給事).
1. 배우는 입장이라면 마땅히 예(禮)와 의(義)를 지키고 문학을 숭상하는 것을 앞세워야 한다. 만약 허황되고 흐트러져 예와 의를 어기고 문학에 해태한 자가 있다면 **불선적에 기재**하는데 허물을 고치고 나면 이름을 지운다. 이보다 더욱 더 심하여 부모를 따르지 않고 형제간에 우애가 없고 친인척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의지할 데 없거나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상례에 성심을 다하지 않고 상을 당한 마당에 혼인을 하고, 정치를 소박하는 자는 서숙에서 내치고 마을에서는 **마을 밖으로 내쫓은 다음 수령한테 보고**한다(一.人家後進 當以守禮義尙文學爲先 如有荒散不勤違禮義怠文學者 書**不善籍** 俟其改而削之 其尤甚而不順父母·不友兄弟·不睦宗族·不姻姻戚·不恤孤窮·斬衰不服·乘喪嫁娶·放出正妻者 塾逐出于塾外里 逐出于里外 又會報于地主官事).
1. 효제(孝悌)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니 마땅히 앞세워 장려한다. 효에 돈독하고 윗 어른을 잘 모시는 사람은 **선적에 기재**한다. 만약 집이 가난한데도 충심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상을 치르는 데에 엄숙히 고초를 견디고 부모가 병환이 나면 손가락을 자르거나 대변을 맞보면서라도 구완하는 등 기특한 행적이 있는 자는 별도로 초록하여 매년 말에 서숙에서는 마을에 알리고 마을에서는 방(坊)에 알리며 **수령한테 보고**한다(一.孝悌是百行之原 當先獎勵 篤孝順悌之人 書善籍 如家貧忠養·居喪嚴苦·病中斷指嘗糞求代·奇異出常者 別以抄錄 每年末 塾會于里 里會于坊 報聞于地主官事).
1. 부지런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제는 농사지을 겨를이 없을 것이나, 혹 자질이 노둔하여 경학에 성취하기 힘든 자는 밭에서 일함으로써 먹고 사는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근자에 세가의 자제들이 교만하고 나태함이 습성을 이루어 내기판에서 노는 것을 즐기고 농토에서 일하는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집안 대대로 이어온 일을 뒤엎어 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어찌 증자가 들판을 경작하고 도연명이 몸소 농사를 지은 뜻에 깃들어 있는 바를 도외시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부류는 **숙장이** 별도로 삼가도록 권면하며, 심하면 마을의 부로(父老)한테 알려 체벌로써 엄하게 징계한다(一.子弟之勤學攻工者 不暇於農圃 其或質鈍難成者 服田食力可也 而近來世族家 驕怠成習 遊嬉於博奕之場 而反以畝畝爲恥 全不致意 以至於蕩覆世業 是豈曾子耕野·淵明躬稼之餘意耶 如此之類 塾長另加戒勉 甚則會里中父老 施答嚴懲事).

1. 서숙에서 함께 공부하면서도 화목하지 못한 자, 주색을 삼가지 못하는 자, 미천한 처지에 사대부 족속을 업신여기는 자, 어린 나이임에도 어른을 능멸하는 자 등은 그 정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는데, 책망으로 충분하면 책망하고 처벌을 가해야 한다면 처벌로써 반드시 고치도록 한다(一.同塾不和者 酒色不謹者 以微賤之子慢忽士大之族者 以少凌長者 從其輕重處罰 可以責者 責之 可以答者 答之 使之必改事).
1. 벼를 사귀는 데에 길이 있으니, 좋은 일을 하도록 채근함으로써 인(仁)에 다가서게 돕고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서로 규찰하고 바른 길을 걸으며 옳은 일을 하도록 서로 의지가 되면, 덕(德)이 날로 이루어지고 정(情)은 나날이 친근해진다. 그에 힘입어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나라가 다스려지는가 하면 온 세상이 평온하고 빛나게 된다. 뉘가 나뉘는 듯하여 소원해지는 것 같으나 실상은 친밀하며 그 공(功)이 약소한 듯 하지만 내실은 폭넓다. 아무렇게나 교제할 수는 없으니 그 친우가 우유부단하고 아첨함으로써 상대하고 세력과 이익으로써 켜 채하는 자와는 결코 같은 서숙에서 함께 배울수 없으니 서숙의 명부에서 삭제해야 마땅하다(一.交朋友有道 責善輔仁 過失相規 道義相仗 德日成而情日親 家國賴以齊治 天地賴以雍熙 其分似疎而實密 其功似約而實博 擇交不可不審 其或柔佞相與·勢利相加者 決不可同學一塾 當絕去塾案事).
1. 이웃 마을끼리 서로 구휼하는 것이 바른 도리이다. 길흉의 큰 일이 있을 때 어떤 때는 재력으로 서로 돕고 어떤 때는 근력을 다하여 서로 돕는다. 만약 수재·화재·도적 등을 당한다면 있는 힘을 다하여 서로 구제한다. 혹시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휼하지 않는 자는 숙장이 경고하여 책망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는다면 마을의 부로(父老)가 엄중히 성토했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서숙의 명부에서 영영 삭제해야 마땅하다(一.鄰里相恤 自是道理 吉凶大事 或以財相扶 或以力相助 若有水火盜賊 亦須極力相救 其或岸視不恤者 塾長警責 而不馴 里中父老嚴討 而不服 亦當永絕塾案事).

구고서숙은 한미한 처지에 있는 자나 빈곤층에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의식(衣食) 비용을 서숙의 재원으로 조달하였다. 앞서 소개했던 길재의 경우처럼 상·하로 나누어 재적생을 관리했는데, 처지에 따라 상·하로 나누었다기 보다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구분한 것이 아닌가 한다. 만약 이 추정이 옳다고 한다면, 상기 입학절목에서 상당수 조항은 상안에 올라 있는 자에게 당장 적용될 내용이고 하안에 올라 있는 연소자에게는 장차 추구하거나 기피해야 할 것들이다. 이처럼 「구고서숙 입학」이 학교규칙이면서도, 덕업상권·예속상교·과실상규·환난상휼 등의 네 강령을 담은 향약을 닮았다. 선적이나 불선적에 올라, 매우 기특하거나 마을에서 내쫓은 인물

을 수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약을 정하는 등 마을 전체를 열린 학교로 삼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구고서숙은 박승 개인이 건립하였지만 매우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주요 사안을 관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향촌교육의 인적·물적 조건이 상당 수준에 이르러 「경외학교절목」(1546)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고 서당이 향약과 연계되어 운영된 이러한 1500년대 중반의 상황은 오로지 개인의 의욕에 따라 좌우되었던 우연한 것으로 볼 게 아니라, 공공적 조직성의 맥락에서 파악함으로써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상주목사 신잠에 의한 서당설립이다. 앞에서 신잠이 태인현감(1543-1549) 시절에 정극인이 세운 서재를 모태로 하는 향학당을 발전시켜 동·남·중·서·북의 오학당을 건립하여 운영했다고 했는데, 상주목사(1552-1554) 시절에는 관내에 17개의 서당을 설립하였다. 『상산지』의 기록에 의하면 18세기 중반 상주목에는 모든 면에 서당이 다 있는데 절반 이상 목사 신잠이 창건한 것이라고 한다.⁵⁵⁾ 신잠이 창건한 17개의 서당과 내력을 소개하면 <표 1>과 같다.

여기에 보이는 17개의 서당은 1749년 당시 읍지에 실린 29개 서당 중 59%에 해당한다. 당시 상주목에 존치하는 서당의 절반 이상이 신잠이 창건한 것이라는 기사가 과장된 게 아니었다. 신잠이 창건한 17개의 서당 가운데 8개가 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이후에 중건되었고, 5개는 서원으로 승격되었다.

주목할 점은 서당에서 서원으로 승격되었을 때 원래의 서당이 없어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계속 존치되었다는 것이다. 서원으로 승격될 때 서당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며 서원이 되면 본래의 서당은 명칭을 바꾸어 다른 곳으로 옮겼고, 명칭을 바꾸어 서원으로 승격되면 서당을 옮기긴 해도 원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영빈서당이 근암서원으로 승격되자 원래 명칭 그대로 수계소 옆으로 옮긴 경우가 후자의 예이다. 나머지 네 경우는 모두 원래의 명칭을 안고 서원으로 승격되어서 서당을 이건설 때 명칭을 바꾸었다(옥성→수양, 속수→봉성, 봉산→봉암, 연옥→지천).

55) 『商山誌』 권1, 「三.學校」: 書堂<書堂依家塾之制 各面皆有之 而過半申侯靈川所創也>.

<표 1> 임란 이전에 창건된 상주목 소재 교육시설 일람표

명칭	주요 기사
霞谷서당	初建於興旺寺舊基 後移於長白寺舊基之右 乙卯 移建於翠鳳山西麓
道谷서당	州有十八書堂 道谷卽其一也 … 則有若靈川申公潛知州事時 始創書堂 爲士子隸業之所 而間值兵燹興廢不一 道谷只有遺址 … 56)
石門서당	初建沙伐洞西 壬癸亂見燒 萬曆丙申(1596) 重創於柄峴南
首陽서당	舊在西北山玉峰之下 名以玉成 因陞院 崇禎後戊子移建今處. 玉成서당이었으나 1631년 서원으로 승격되자 이건하고 '수양'으로 명칭 변경57)
魯東서당	初在寒山東麓 壬癸亂見燒 崇禎己巳 重建新坊洞 肅廟丙午移建今處
修善서당	嘉靖壬子(1552)申靈川來遊喜其山回水透 謀父老營築書堂 且手書修善書堂四大字揭額 後移建於溪西 壬亂見燒 癸卯重創於鐵巖下
龍門서당	壬癸亂舊堂見燒 其後改建于雩里嶺及廣洞兩處 肅廟丁酉又移築於熊山舊址百步許
穎濱서당	初建縣村川邊 … 癸巳見燒於倭 癸卯 重建于樹介村 後因陞院 移附于修稷所 肅廟丁卯移建於今處. 영빈서당이 近岫서원으로 승격되자 修稷所 옆으로 옮겼다가 다시 이건58)
梅嶽서당	舊在佩月村中 移黃龍村 崇禎後戊子又移建于今處
梧山서당	初建寶灘上 壬癸亂見燒 其後重建梧桐里號梧山 肅廟己亥見燒移建今處
孤峰서당	在州東二十里 甲長東麓孤峰下長川村
鳳城서당	舊在丹密縣西北一里許 後因陞院 移建于龍巖 丙戌見燒 壬辰改建于舊址. 涑水서당이 서원으로 승격되자 이건하고 '봉성'으로 명칭 변경59)
白華서당	舊建於新德里中 移無等里及西歸洞兩處 肅廟辛巳又移今處
鳳巖서당	舊名鳳山 因陞院 今上庚戌改建于今處. 鳳山서당이었으나 봉산서원으로 승격되자 이건하고 '봉암'으로 명칭 변경
松巖서당	申靈川潛創建 其後累度廢壞 處士鄭蘭時竭誠經理重建堂宇 俾有養士之具
智川서당	舊名淵巖 因陞院改創于今處. 淵巖서당이 서원으로 승격되자 이건하고 '지천'으로 명칭 변경60)
竹林서당	壬辰亂盡燒 肅廟乙亥重創
	己上十七書堂 申靈川潛(1491-1554)爲牧使時所建
弄清臺	在州北山陽川上 舊爲舍人姜溫(1496생, 1519생원·1525문과)藏修61)

유념해야 할 것은 읍지 안에 학교나 서당·서재 등으로 분류되지 않고 누정(樓亭)·관정(觀亭)이나 암자 또는 사적·고적의 항목에 들어 있는 시설이 장수(藏修)·강학처로

56) 『商山誌』 권7, 「記」, 道谷書堂重修記<姜世揆>.

57) 『商山誌』 권1, 「三.學校」, 院祠: 玉成 … 本以書堂 崇禎辛未(1631, 인조9)陞院 … .

58) 『商山誌』 권1, 「三.學校」, 院祠: 近巖 … 顯廟乙巳(1665) 因書堂 舊舍建廟 … .

59) 『商山誌』 권1, 「三.學校」, 院祠: 涑水 在丹密縣西北一里 正德丙寅(1506, 중종1) 爲景節公孫仲墩立生祠 壬亂後改卜于涑水書堂下 孝廟丙申 合享按廉使申祐 號景賢祠 肅廟壬午陞號(涑水서당→景賢祠→涑水서원).

60) 『商山誌』 권1, 「三.學校」, 院祠: 淵岳 … 肅廟壬午 因書堂陞院.

61) 『商山誌』 권1, 「七.古蹟」, 亭觀.

사용된 경우가 더러 있다는 점이다. <표 1> 말미의 「농청대」가 그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강학처를 명기하지는 않지만 후진양성에 매진하며 살았다는 인물들이 다수 올라 있는 경우도 있다.⁶²⁾ 따라서 조선전기 향촌의 교육시설이 지리지에 온전히 실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성룡이 1580년 상주목사 시절 각 리(里)에 사장(師長)을 두어 어린 학도들을 가르치게 했다는 기사가 『상산지』에 실려 있지만,⁶³⁾ 이 사장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교수활동을 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유성룡이 상주목사 시절에 사부(四部) 훈장을 했다는 이기련이라는 인물이 검출되는데,⁶⁴⁾ 사부(四部)가 상주목의 어느 곳 어느 정도 규모의 지역인지 또는 이기련이 각 리의 사장과 동일한 역할을 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어쨌든 조선전기 향촌교육의 인적·물적 조건이 사료상에 드러난 정도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조선전기에 지방관이 주도하여 서당을 건립한 경우는 상주목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1566년 진주목사 박승임(朴承任, 1517-1586)도 동·서·남·북 각 면(各 면 소재 리의 개수가 상주목에 비해 많음)에 서재를 두고 후진을 양성하도록 했는데, 네 서재 모두 강당·서고·숙소·취사시설·학전·수호인 등을 두루 갖추었고 교수 전임자도 각각 배치하였다. 이 가운데 동면·서면 서재는 소실되어 유지(遺址)만 남았고(『진양지』가 작성된 1622년 상황), 남면·북면 서재는 왜란을 겪으면서 황폐화 되었다가 1613년에 복구되었다. 이들 네 서재를 포함해서 양란 즈음까지 진주목에 수립되었다고 확인된 교육시설을 추려서 소개하면 <표 2>와 같다.⁶⁵⁾

62) 다음에 다룰 진주목의 경우, 이런 사례로 확인된 인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晉陽誌』 권3, 인물: 申霽 … 叔舟之曾孫 … 不求名利 別構書堂 訓誨後進 日彈琴詠詩以自娛.

『晉陽續誌』 권1, 인물: 成汝信 … 龍蛇亂後 鄉邑蕩悉 學校盡廢 公爲修鄉約 挽回頽俗獎誘後進 講明絕學 於是儒風復振; 鄭麟祥 … 自幼好學 纔冠就學於南冥之門 … 亂已 杜門求志訓迪後進; 河仁尙 … 萬曆癸丑(1613)中生員 … 教授後進 一時名勝多出其門.

『진주통지』 권3, 「志」 인물: [金海金氏] 金遂秋 … 壬辰亂后 林樊에 晦跡하여 琴·書로써 즐거움으로 삼으니 遠近에서 배우는 者 많았다.; 金建秋 … 伯仲兄을 따라 三仁山下에 移寓하여 經史를 講論하고 子侄을 教訓함으로써 세상을 마쳤다.; [密陽孫氏] 孫燦 … 일찍한 나이로써 武科及第하여 部將에 任命되었다. 때는 宣祖朝 兄弟四人이 다 登科宦達하였건마는 公은 벼슬을 달게 생각하지 않고 田里로 돌아와 先業 지키는 것과 後進教養하는 것으로써 평생을 마쳤다.

63) 『商山誌』 권1, 「八.名宦」: 柳成龍<官牧使 … 興學愛士出於誠心 月朔親到鄉校 會諸生 行揖讓之禮 各里置師長 以訓蒙士 … >. 『西厓先生年譜』 권1, 「연보」: (萬曆)八年庚辰(1580)<先生三十九歲> 春 … 特拜尙州牧使. … 作文諭童蒙師長< … 嘗謂士習之淪 蒙養之不正也 風俗之壞 鄉約之不行也. 各里擇差童蒙師長及鄉約有司 作文以諭之. 大略以敦五教爲先 勸課誘掖 誠意懇到 凡所施爲 動遵古昔 朞月之間 學政一新 風化大行>.

64) 『商山誌』 권4, 「九.科第人物」: 李起鍊< … 受學於河師傅洛(1530-1592, 1568兩試)之門 甚見重官尙州教授 文忠公柳成龍知州時 舉以爲四部訓長 … >.

65) 이 표는 다음 네 개의 사료에 추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2> 양란 즘음까지 창건된 진주목 소재 교육시설 일람표

명칭	주요 기사
東面書齋	嘉靖丙寅(1566) 朴嘯臯承任 爲牧使 依黨序之規 四面各置書齋 講堂·書樓·東西齋·廚庫靡不具焉 旣置學田又置守護人 爲士子藏修之地 使生員(1528)鄭斗訓誨後進 未幾災今有遺址
南面書齋	齋舍·規制 與東面同亦朴承任所建也 使進士俞伯溫(1492-?, 1525진사)主訓誨 經亂荒廢 萬曆癸丑(1613) 幼學河振海 重創講堂 刊童子習一篇·史略初卷 以爲訓蒙之資
西面書齋	齋舍·規制 與東面同 亦朴承任所建也 未幾災 今有遺址 訓誨責任者는 覺齋 河沆(1538-1590, 1567생원, 河受一의 숙부) ⁶⁶⁾
北面書齋	齋舍·規制 與東面同亦朴承任所建也 使生員河魏寶(1527-?, 1558생원)主訓誨 或月講於斯 或居接於斯 後進多所成就 經亂荒廢 萬曆癸丑(1613) 草創數間收拾學田
加佐村書齋	有韓偉字太虛 家貧好讀書 受業於姜進士應奎(1528진사) 最熟於詩·書·論·孟 教人口授而眼不到 生徒幾百餘人 多有成就 至今教誨之勤 稱韓長云
元堂書齋	河受一(1553-1612, 1589생원·1591문과)記曰 … 今我柳丈宗智(1546- 1589) 悶吾道不行憤英才虛死 遂謀里人之有子弟者 乃築書舍 以爲藏修之所 … 近里閭而壓巷門兼家塾也 遠州城而專一面兼黨庠也
萬竹堂	守愚堂崔永慶(1529-1590)의 藏修所 ⁶⁷⁾ 후에 道江書堂.
鄭突亭	進士鄭承尹(1542-1610, 1570진사)記曰 … 抑古有家塾之風 … 又築一舍 以爲蒙士藏修之所 … 造士賓興端不在此乎 …
釣月臺	在冥鴻亭東 士人河就演所構 以爲藏修之地 魚灌圃名之.
永潭精舍	灌圃魚先生(魚得江, 1470-1550, 1492진사·1496문과)所築 前有蓮塘後植梅竹 景致幽絕 以爲暮年棲息之地
江閣	或云玉峯精舍 … 故承旨趙舜(1467-1529, 1492문과)之第別舍也 壬辰之變爲兵火所焚<正郎河受一記曰 玉峯精舍 外先祖留守趙公之所構也 … 戊子(1588)四月上澣記>
退守亭	寧無成河應圖(1540생, 1573진사) 少時讀書之室 而名之以效忍堂 晚暮退休 改揭以退守者也
三溪亭	司憲府持平 三溪鄭密(1520생, 1543진사·1558문과)의 講學所
峴山齋	孫玩梅堂綽(1577생, 1613진사)이 讀書하던 곳
杏亭	樂眞軒鄭仁平手植盤桓之所也 退溪李文純公(1501-1570)·曹芝山好益(1545- 1609) 嘗過此 講禮. 記略曰 … 遂扁堂曰樂眞 因手植文杏於前 而築亭以名之 日與村秀才子講道論文 以爲琴書之托
水谷精舍	河受一< … 宣廟己丑中司馬 辛卯(1591)登第 歷官典籍·刑曹·吏曹正郎 外除靈山縣監·尙州提督·慶尙都事 晚年 … 築水谷精舍 專用訓誨諸生爲己任 … > ⁶⁸⁾

『晋州通志』 권1, 「書齋(附)學校」 및 「樓亭」; 권3, 「인물」, 진양하씨 / 『晋陽誌』 권2, 「書齋」·「亭臺」; 권3 「인물」 / 『晋陽續誌』 권1, 「亭臺」 / 『晋陽誌續修』 권1, 「亭臺」.

66) 『松亭先生續集』 권3, 「부록」 연보: 二十二年 明宗大王昇遐 明穆宗隆慶元年 丁卯(1567) 先生十五歲 陪家大人正郎府君 讀書覺峯齋<嘉靖丙寅(1566) 朴嘯臯承任 爲州牧 創立四齋 以教迪後學 正郎公時爲覺峯齋長 先生陪往焉>.

67) 『守愚堂先生實記』 권2, 「부록」, 遺事: 丁亥(1587) … 李雪壑大期·河松亭受一·金寒齋昌一·申伊溪 橫諸賢 并受學于先生

<표 2>에서 ‘정돌정(鄭突亭)’ 이하 ‘행정(杏亭)’까지는 「서재」조가 아니라 「누정·정대(亭臺)」조에서 발췌한 것이고 맨 마지막 ‘수곡정사’는 「서재」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인물」조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 것이다. ‘수곡정사’라는 명칭은 아마도 후대인들이 붙인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에는 아예 읍지에 올릴 이름조차 없었다. 하수일이 초가를 지어 학도들을 가르친 곳을 그냥 초당(草堂)이라고 불렀던 것이다.⁶⁹⁾ 상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료에 잘 드러나지 않은 교육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재차 확인된다.

<표 3> 양란 즈음까지 창건된 안의현 소재 교육시설 일람표

명칭	주요 기사
自怡堂	葛川一號
葛川書堂	葛川林薰(1500-1584, 1540생원)講道之所
瞻慕堂	瞻慕堂林芸(1517-1572, 林薰의 弟)講學之所, 在自怡堂下
明信齋	九柳齋鄭輅·陽坡禹治淮·守愚堂朴德馨(朴明樽<1590문과>의 祖)·三五亭朴德聰(훈도)·金川柳世泓修契講磨之所
八玩堂	八玩堂鄭夢瑞(鄭庸<1539-1593>의 父)棲息之所
嶧川書堂	嶧陽鄭惟明(1539-1595, 1573진사, 鄭蘊의 父)講學之所
石泉齋	石泉林得蕃(1507진사, 林薰의 父)講學之所
涵養齋	樂水愼權(1501-1573)講學之所 嘉靖辛丑(1541)建
博約齋	棠山姜渭龍(1536-?, 1558진사)講學之所
磨學洞書堂	葛川林薰·處士林英·瞻慕堂林芸三兄弟講學之所
西澗小樓	西澗林承信(林芸의 子)講學之所, 在自怡堂下
鍾潭書堂	知足堂朴明樽(1590문과)講學之所
道山齋	宣武功臣(임란당시 軍功)上護軍李克凱<見忠>講道之所
永慕齋	吏曹判書廣州李世傑(1463-1504, 1489양시·1492문과)講學之所
龜淵精舍	嘉靖庚子(1540)創築 樂水愼權講磨之所
夜川精舍	夜川愼復振(愼權의 子)講學之所
瞻永齋	牧使鄭從雅(1425-1498, 1453무과)講學之所
樂水亭	樂水愼權詩禮之所 嘉靖壬寅(1542)創建 … 先生隱居其間 與曹竹軒(1504-1582, 1531양시·1540문과)·李龜岩·成石谷諸賢講學於斯 ⁷⁰⁾

조선전기 각 지방에 향교·서원 이외의 향촌교육시설이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68) 『晉陽誌』 권3, 인물.; 『晉州通志』 권3, 「志」 인물, 진양하씨.

69) 『松亭歲課』 권4, 「記」 草堂記: 因茅屋東角構一間 以所遊息者 草堂也 … 余率大小兒教授 … ; 重修草堂記: … 孿大小兒 教授詩書 覺後學也 …

70) 『안의읍지』 인물: 愼權 … 龜淵洞搜勝臺邊 築涵養齋·樂水亭·龜淵精舍 於搜勝臺之東西 日與群弟子及賢士友講義樂道 而終道德學問爲一世推重 … .

《교육사학연구》 제27집 제2호(2017. 11.)

예로 든 두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안의읍지』와 『영가지』에 나타나 있는 소규모 교육시설 가운데 양란 즈음까지 창건되었다고 확인된 것을 추려내어 정리하면 <표 3>·<표 4>와 같다.⁷¹⁾⁷²⁾

<표 4> 양란 즈음까지 창건된 안동부 소재 교육시설 일람표

명칭	주요 기사
豐岳書堂	嘉靖癸亥(1563)創立 生員權景綰等上疏 仍賜學田(후에 병산서원으로 승급)
靑城精舍	權松巖好文(1532-1587, 1561진사)所隱居處
寒棲精舍	一名松巖精舍 權好文因以爲號
石門精舍	鶴峯金誠一(1538-1593, 1564진사·1568문과)□此爲退休之所舍
謙岳精舍	謙庵柳雲龍(1539-1601, 유성룡의 형)所構 退溪先生扁額
遠志精舍	西厓柳成龍(1542-1607, 1564양시·1566문과)所構
玉淵精舍	亦西厓所構
八耦書堂	內翰裴龍吉(1556-1609, 1585진사·1602문과)所築
養正書堂	具伯潭(具鳳齡, 1526-1586, 1546생원·1560문과)所議建
伊溪書堂	上舍權大器(1523-1587, 1552생원)創構焉 遠近負笈者仝集 後進輩出
芝陽書堂	縣監鄭士誠(1545-1607, 1568진사)爲訓誨子弟構焉
鏡光書堂	隆慶戊辰(1568, 선조1)創立書堂. 왜란때 소실 1607년 복구 ⁷³⁾
佳野書堂	生員金彦璣(1520-1588, 1567생원)爲訓後生勑之 遠近來學者仝集 壬辰亂後廢棄 門人進士權訥(1547-?, 1573진사)移棚于遠岡 因名遠岡書堂
龜潭書堂	參判柳景深(1516-1571, 1537양시·1544문과)·牧使張文輔(1516-?, 1546생원·문과)·察訪金守一(1528-1583, 1555생원, 김성일의 형)·進士李中立(1533-1571, 1558진사)·士人李種善等構此養蒙
鳳山書堂	縣監李介立(1546-1625, 1567진사) 愛泉石 寓居創立 學徒仝集

지금까지 살펴 본 네 지역 모두 상당수 교육시설의 창건이 수령이나 전직관리 또는 생원·진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걸출한 인물들이 다수 등장한다. 이들에 의해 창건된 교육시설에 과연 어떤 부류의 인물들이 드나들었을까? 이 의문을 풀 단서는 향약과 학교의 연계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읍지에 기재된 향촌교육 시설을 검토하기 이전에 이미 향약과 학교와의 연계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향약의 시행이 서당 운영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은 조선

71) 『안의읍지』 학교·인물.

72) 『永嘉誌』 권4, 「서당」.

73) 『敬堂先生續集』 권1, 「雜著」 諭鏡光諸生文<戊申,1608○時爲鏡光堂長>: 書堂之設 其來久矣 而壬辰之夏 島夷倭擾 舉國奔竄之餘 堂宇頽圯 絃誦輟響者一十有六年矣 丁未(1607)春 松坡權公 乃撤而新之 或因其舊 齋舍垣墻 無一不得其正 權公之有助於學者 深且厚矣 … .

전기 향촌교육활동이 국소적 현상에 그친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영가지』에 실린 「신정10조」(新定十條)의 마지막 조항[訓童蒙]이 이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

새롭게 정한 10개의 조약 「신정10조」는 「향규의 옛 조약」(鄉規舊條) 다음에 등장한다. 그것은 「신정10조」가 종래의 「향규」를 새롭게 정리한 10개의 조항이라는 의미이다. 그 마지막 조항인 「동몽을 가르치는 것(訓童蒙)」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⁷⁴⁾

각 면에서 학행이 있어 사표가 될 만한 한 사람을 부(府)에 보고하면 차정첩을 내려 훈장으로 삼는데, 면내의 아이들을 모아 소학의 도리로써 가르친다. 나이 20세에 이르러 재능이 있는 자는 훈장이 이름을 적어 향교에 올리고 학적을 비치한다. 성과가 두드러진 훈장은 법전에 의거하여 부(府)에 보고하여 추천한다. 혹 엄하게 가르치지 않아 학도들이 태만하여 학업을 게을리 하면 향벌(鄉罰)로 논한다<이상은 서에 유성룡선생이 정했음>.

『영가지』에 실어 놓은 「신정10조」는 향촌의 질서를 바르고 도탑게 하고자 설정한 것이다.⁷⁵⁾ 즉, 향촌의 특정 구성원에게만 해당되는 조항이 아니다. 그런데 그 향규의 마지막 조항이 위와 같다. 각 면 훈장과 각 면 동유(童幼)를 말하고 있고, 향교에 들기까지 이들의 역할을 정해 놓았다. 유성룡이 이러한 향촌규약을 설정하면서 몇몇 향촌교육 시설 또한 조성하였는데, 이 시설이 특정한 부류만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유성룡이 상주목사 시절(1580) 각 리에 동몽사장과 향약유사를 두어 학정과 풍속을 독려했는데,⁷⁶⁾ 이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서당을 운영하는 게 향약과 연계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경외학교질목(1546), 과거사목(1553), 상정과거규식(1557), 학교모범·학교사목(1582) 등의 조치들은 거저 나올 수 없다. 이런 조치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당시 조선사회의 학정에 관한 조건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한다. 임진왜

74) 『永嘉誌』 권5, 「新定十條」, 訓童蒙: 各面有學行可爲師表者 一人 報府 差帖 名之曰訓長 聚會掌面童幼教之 以小學之道 年至二十 有成材者 訓長 錄名陞之鄉校 置簿學籍 訓長有成效者 依法典報府推薦 或不嚴訓誨使學徒荒怠失業者 論以鄉罰<右西厓柳先生裁定>

75) 「신정10조」 가운데 나머지 9개를 차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重鄉任·嚴會儀·厚彝倫·正鄉案·明禮俗·尊高年·禁非違·治吏胥·均徭役.

76) 『西厓先生年譜』 권1, 「연보」: (萬曆)八年庚辰(1580)<先生三十九歲> 春 … 特拜尙州牧使. … 作文諭童蒙師長< … 嘗謂士習之淪 蒙養之不正也 風俗之壞 鄉約之不行也. 各里擇差童蒙師長及鄉約有司 作文以諭之. 大略以敦五教爲先 勸課誘掖 誠意懇到 凡所施爲 動遵古昔 朞月之間 學政一新 風化大行>.

란 직전 상황은 향촌교육을 담당하는 학장을 당연하게 전제하는 규정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군현 단위의 학교인 향교의 규정에 각 면 학장 각 면 동몽 관련 조항이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당시의 향촌교육 조건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1585년에 작성된 「복천향교학령」 가운데 각 면 학장 각 면 동몽 관련 조항을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⁷⁷⁾

1. 매월 보름 전후에 수령이 직접 향교에 가서 교관과 함께 고강을 하거나 또는 문제를 내어 제술을 시행하여 성적에 따라 상벌을 내린 다음 모두 장부에 기록한다<같은 날 각 면의 학장이 가르치는 동몽도 소집하여 교생들과 마찬가지로 고강하거나 제술하도록 한다>(一.每月望前望後 守令親至鄉校 同教官考講 或命題製述 科次賞罰 後并置簿<其日 各面學長所誨童蒙 亦召集 同校生考講或製述>).
1. 유생들의 강경은 … <각 면 동몽의 경우, 문리를 이미 통한 자 이외에는 외울 수 있는지 여부로 통·약·조·불 등의 성적을 매긴다>(一.諸生講經 … <各面童蒙 則文理已通者外 皆以誦之能否 定通略粗不>).
1. 각 면의 학장이 가르치는 동몽들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한다(一.各面學長所誨童蒙 亦依右行之).

충청도 제독관을 지낸 조현은 1586년 학정에 관한 상소문을 올렸는데, 향촌에서 8세 이상 어린 학동을 가르치는 학장의 존재를 당연시 하고 있다.⁷⁸⁾

신이 제독의 직임을 받았기에 선현의 논설로써 학교의 법규와 제도를 새로이 정비하고 아울러 과거사목을 엄격하게 할 것을 청합니다. 우선 8세 이상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학장에게 가르침을 받게 합니다. 유학을 업으로 삼는다면서 제멋대로 독서하는 무리들을 일체 혁파하고 모두 향교에 소속시켜 재(齋)를 나누고 유(類)를 구분하여 자질에 따라 폭넓게 가르칩니다.

향교의 학령에 각 면의 학장 및 동몽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고, 충청도의 학정을 전담한 제독관이 아동을 가르치는 학장을 전제로 하는 상소를 올렸다는 사실은 임란

77) 『雪月堂先生文集』 권4, 「雜著」, 복천향교학령(1585)<禮安鄉校學令中 添入十條>.

박종배(2006), 조선시대의 學令 및 學規, 『한국교육사학』 제28권 제2호, pp.213-237.

78) 『重峯先生文集』 권5, 「疏」, 辨師誣兼論學政疏<丙戌(1586)十月公州提督時>: … 臣既冒受提督之任 請以先賢之說 申學學校規制 并嚴科舉事目 惟使童蒙八歲以上者 聽教于學長 業儒私自讀書之類 一切革罷 悉付于鄉校 分齋別類 因村廣誘 … . 이 상소문은 『선조실록』(1586.10.1.)에도 실려 있는데 서로 다른 문구가 더러 있다.

직전 당시에 향촌교육 시설과 교수요원이 종래의 이해보다 더 폭넓게 분포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IV. 논의 및 맺음말

교육사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벌어진 어떤 분야의 역사에 대해 논하더라도, 양란이라는 변수를 도외시한 논의는 타당할 수 없다. 교육사의 경우, 잇달아 벌어진 그 혹독한 전란으로 인해 어떤 교란이 발생되었는지 헤아리는 작업을 생략하고 조선교육사를 서술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란 이후 황폐화 된 삶의 제반 조건을 복구하던 어수선한 정황을, 마치 아무 일 없었는데 우리 선조들이 이리저리 우왕좌왕 하는 꼴로 바라보고 우리의 역사를 서술해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심정으로 이 연구는 구상되었다. 또한 영광의 시기를 맞이하도록 인도하고 밑거름이 된 인고(忍苦)의 시기, 그것도 온전한 우리의 것을 도적들이 분탕질하여 놓았으나 그것을 건디고 다시 일어선 시기, 이런 시기에 대한 천착이 없이 영광의 시기만을 구가하려는 자세로 조선교육사를 서술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양란의 발발과 그 뒷수습이라는 막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서당에 대한 이해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조선전기 향촌교육에 대한 시행방침의 기조와 추이를 밝히고, 또다른 한편으로 실제 나타난 당시의 향촌교육 실행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조선전기 향촌교육의 실태를 종래와 달리 보고자 하였다.

이미 임란 이전에 군현 단위 이하의 지역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인구가 상당했고, 따라서 그들이 활동할 만한 교육시설 역시 회소하지 않았으며, 몇 개의 리(里) 또는 한 개의 면(面)을 아우르는 일종의 교육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직성과 체계성을 띤 것으로서, 국가적 교육시책이나 방침과 무관한 게 아니었으며 관(官)의 간여를 도외시하고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교육활동이 연계되어 있었다는 점은 교육인구의 대상과 범위가 일부 특정집단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훈민정음의 반포와 언문자모 및 한자학습교재의 유통, 『소학』·『삼강행실언해』·『여씨향약언해』 등의 보급과 강조, 생원·진사 시험 회수의 누적과 같은 것도 조선전기의 교육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연구의 과제는 지금으로부터 400년 이전의 일을 논구하는 작업이다. 이런 과제를 추구하는 데에 가장 아쉬운 점은 해당 사료들이 당시의 현실을 온전히 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아쉬움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400년 전 조선의 실태를 고스란히 담은 사료가 풍부하게 현전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 만큼 혹독한 대내외적 전란을 여러 차례 겪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료에 나타나 있는 실태, 그 이상의 상황이 당시에 전개되었을 수 있다는 추정은 지극히 정당하며, 이런 추정에 따른 귀납적 사료의 수집에 힘써야 한다.

조선후기 서당교육 내지 향촌교육의 실태는 양란 이후 교육에 대한 인적·물적 조건을 임란 이전의 수준으로 복구하고 나아가 더욱 더 알차게 확충하려는 노력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조현명의 「권학절목」이 전국에 반포된 이후의 향촌교육 열개는 임란 이전에 그 예비적 실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다. 조선후기에 「권학절목」(1732) 「태학별단」(1869) 「신설학교절목」(1886) 「태학규제」(1893) 「흥학장정」(1896) 등으로 이어지는 학정의 흐름을 조선전기의 교육에 관한 방침과 조치 및 실태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게 조선교육사를 전체적으로 조감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런 시각에 입각한 후속연구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태종·세종·중종·명종·선조), 『승정원일기』(영조), 『경국대전』(1485).
- 『경북향교자료집성 I』(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2).
- 『東京通志』(경주향교, 1933)
- 『商山誌』(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 『신증동국여지승람』(한국고전종합DB).
- 『安義邑誌』(안의향교, 1966).
- 『永嘉誌』(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 『국역 영가지』(안동군, 1991).
- 『一善誌』(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晋陽誌』·『晋陽續誌』·『晋陽誌續修』(경상대문천각 소장).
- 『晋州通志』(一鵬精舍, 1964)(경상대문천각 소장).
- 『剛窩先生文集』(任必大, 1709-1773)(한국국학진흥원 소장).
- 『敬堂先生續集』(張興孝, 1564-1633)(한국문집총간 69).
- 『慕齋先生集』(김안국, 1478-1543)(한국문집총간 20).
- 『栢谷先生年譜』(鄭岷壽, 1538-1602)(한국문집총간 48).
- 『不憂軒集』(정극인, 1401-1481)(한국문집총간 9).
- 『西厓先生年譜』(유성룡, 1542-1607)(한국문집총간 52).
- 『雪月堂先生文集』(金富倫, 1531-1598)(한국문집총간 41).
- 『松亭先生續集』(河受一, 1553-1612)(경상대 문천각 소장).
- 『松亭歲課』(河受一, 1553-1612)(경상대 문천각 소장).
- 『守愚堂先生實記』(崔永慶, 1529-1590)(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治隱先生續集』(길재, 1353-1419)(한국문집총간 7).
- 『陽村先生文集』(권근, 1352-1409)(한국문집총간 7).
- 『佔畢齋集』(김종직, 1431-1492)(한국문집총간 12).
- 『重峯先生文集附錄』(조헌, 1544-1592)(한국문집총간 54).
- 『鶴川先生遺集』(朴承, 1520-1577)(한국국학진흥원 소장).

《교육사학연구》 제27집 제2호(2017. 11.)

『寒岡先生年譜』(정구, 1543-1620)(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希樂堂文稿』(김안로, 1481-1537)(한국문집총간 21).

『훈몽자회』(최세진, ?-1542)(朝鮮廣文會, 1913).

강창석(2014), 諺文字母의 작성 주체와 시기에 대하여, 『언어와 정보 사회』 제22호.

김인걸과 한상권(편)(1986), 『朝鮮時代 社會史研究史料叢書(一) 鄉約』, 보경문화사.

류영하(2012), 『국역 학천선생유집』, 한국국학진흥원.

박종배(2006), 조선시대의 學습 및 學規, 『한국교육사학』 제28권 제2호, 한국교육사학회.

박종배(2013), 불우헌 정극인의 태인에서의 교육활동과 그 의의, 『한국교육사학』 제35권 제4호, 교육사학회.

백두현(2007), 한글을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 사람들의 문자생활, 『서강인문논총』 제22집.

장정호(2006), 조선시대 독자적 동몽 교재의 등장과 그 의의 -『훈몽자회』와 『동몽선습』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0권 1호.

정순우(2013), 『서당의 사회사-서당으로 읽는 조선 교육의 흐름-』, 태학사.

지정민(1996), 조선전기 서민 문자교육에 관한 연구-慕齋 김안국의 교화서 언해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6·7집, 교육사학회.

Courant, M.(1894), *Bibliographie coréenne, Tableau littéraire de la Corée, Tome Premier*, Paris.

<Abstract>

A study on educational condition of local community
in the former period of Chosen Dynasty

Kim, Gyung Yo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this study, I try to show the educational condition of local community in the former period of Chosen Dynasty with a different viewpoint to the previous understanding.

For this purpose, I investigate and review three problems. First of all, the basis or line of public policy for the educational condition of local community in this period. Second of all, the change of condition for teaching and learning such as invention of Hun-Min-Jeong-Eum, circulation of studying materials for Chinese letters, publication of several Korean versions, distribution of Korean village codes(鄉約), increasing number of people who could be the teaching staff, etc. Third of all, experience of teaching and learning, in personally and also in collectively. And the number and level of facilities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several local communities.

The results of my investigation are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educational condition of local community is not bad already in the former period of Chosen Dynasty. In both aspect of personnel and materiel, considerable actual condition for community education had been realized before Japanese Invasion in 1592. They had made a sort of educational network.

We need a new understanding for the history of education in local community in the latter period of Chosen Dynasty. In this period, the situation of education in local community was restoration of former condition and moreover it's revision and enlargement.

《교육사학연구》 제27집 제2호(2017. 11.)

Key words : small facility for education, local community education, teacher of local community, pupil of local community, educational network.

§ 논문 투고 : 2017. 10. 27.

§ 심사 시작 : 2017. 11. 10.

§ 게재 결정 : 2017. 11. 29.